

碩士學位論文

麻藥類密輸事犯의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 濟州 國際自由都市 指定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rugs-smuggling and Countermeasures in Korea

－ Relating to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Plan －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姜 性 允

麻藥類密輸事犯의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 濟州 國際自由都市 指定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昌 君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7月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司法行政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姜 性 允

姜性允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3年 7月

審 查 委 員 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問題의 提起	1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3
第 2 章 麻藥類의 意義	5
第 1 節 麻藥類의 種類와 特性	5
1. 麻藥類의 種類	5
2. 麻藥類의 特性	8
3. 麻藥類使用의 症狀	18
第 2 節 麻藥類의 生産과 流通	20
1. 麻藥類의 生産	20
2. 麻藥類의 流通	29
第 3 章 麻藥類事犯과 規制實態	42
第 1 節 麻藥類事犯	42
1. 概要	42
2. 麻藥類事犯의 特性	43
第 2 節 麻藥類·麻藥類事犯 規制의 實態	46
1. 麻藥類 問題의 認識	46
2. 國家 麻藥類退治 戰略과 規制法規	47
3. 麻藥類事犯 搜查體系	55
4. 麻藥類事犯 團束狀況	58
5. 麻藥類事犯 管理實態	66

第 4 章 麻藥類事犯에 대한 各國의 對策	67
第 1 節 各國의 個別的 對策	67
1. 美國	67
2. 日本	68
3. 中國과 東南亞	68
4. 獨逸과 中南美	69
第 2 節 國際麻藥類事犯 共助搜查體制	70
第 3 節 犯罪收益 剝奪	72
1. 概 要	72
2. 國內 關聯法規의 檢討	74
第 5 章 濟州國際自由都市化와 麻藥事犯對處 方案의 摸索	78
第 1 節 濟州國際自由都市化의 意味와 內容	78
1. 國際自由都市의 意味	78
2. 國際自由都市의 主要內容	79
第 2 節 麻藥 搜查의 實題事例와 對處方案	81
1. 濟州에서의 實題事例와 經驗	81
2. 麻藥類事犯 對處方案	84
第 6 章 結 論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5

表 目 次

< ㉟ 1 > 痲藥類分類體系	7
< ㉟ 2 > 痲藥類使用症狀	8
< ㉟ 3 > 世界 阿片 生産量	9
< ㉟ 4 > 世界 主要 코카옴 生産國 生産量	9
< ㉟ 5 > 痲藥類事犯 趨勢	9
< ㉟ 6 > 年度別・類型別 痲藥類事犯 團束現況	60
< ㉟ 7 > 職業別 團束現況	6
< ㉟ 8 > 年齡別 團束現況	6
< ㉟ 9 > 痲藥類事犯 性別現況	6
< ㉟ 10 > 地域別 團束現況	6
< ㉟ 11 > 外國産 痲藥類 密搬入 現況	5
< ㉟ 12 > 外國人 痲藥類事犯 現況	6
< ㉟ 13 > 痲藥類 證據物 採取要領	9
< ㉟ 14 > 痲藥類 補償金 支給基準	9

第 1 章 序 論

第 1 節 問題의 提起

국회는 2001년 12월 27일 제주의 미래를 바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법률 제6643호(2002년 1월 26일)로 의결하였으며, 이로써 1960년대 이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려는 도민들의 숙제가 풀렸다.¹⁾ 이제 제주도는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국제적이고 자생력 있는 지역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여건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를 더 갖추게 된 것이다. 자유로워진 외국인의 출입과 함께 내국인 면세점제도, 투자진흥지구제도,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교육에 대한 특례제도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변모되면 개방형 신통상국가 전략의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해외쇼핑·어학연수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외화낭비 억제, 세계적인 우수 기업들의 유치로 국부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제주도가 지정학적 위치에 힘입어 국제교류의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진출의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또한 북한의 개방과 연계하여 “평화의 섬” 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것이다.²⁾ 이처럼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본격적인 출범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국

1) 이 법안은 2001. 11. 29. 여·야의원 2백55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무산되는 산고 끝에 통과된 것이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화의 기대효과로는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면서 21세기 관광,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 성장하여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기하려는데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인구는 54만3천명에서 2011년에는 62만명으로, 1인당 GRDP는 892만6천원에서 2011년도에는 2,205만1천원으로, 실업률은 2.5%에서 2011년에는 2.0%로, 관광객수는 411만명에서 2011년에는 992만9천명을, 의료인력은 2,557명에서 2011년에는 4,907명으로, 주택보급률은 97.1%에서 2011년에는 103%로, 발전량은 190만 240Mwh에서 2011년에는 396만 1000Mwh로 증가 예상된다.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3, 64쪽 참조.

제자유도시로의 출발은 우리들에게 장미빛 미래만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³⁾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는 우리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질서와 국민생활을 교란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유발할 것이다. 때문에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최소화시키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를 점검한다면 제주지역이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자유출몰지역으로 변질되는 것, 특히 국제적인 마약조직의 거점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이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굳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를 연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마약류 실태는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종래 유엔 등으로부터 마약 안전국으로 인식되어온 우리나라가 국제마약조직의 유통거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검찰은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조직이 남아공에서 밀반입한 대마초를 일본으로 가져가려던 사건을 포착하였다.⁴⁾ 태국의 쿤사 등 6개의 국제마약조직들은 헤로인과 코카인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가져가고, 필로폰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통해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파악되었다. UN이 인정한 마약 안전국인 우리나라를 경유하면 일본과 미국 등 마약류의 주요 소비국가의 세관을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가운데 마약류 밀수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세관의 단속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마약류를 술이나 물에 녹여 세관을 통과하거나 물에 녹인 마약류를 옷에 적신 뒤 그 옷을 입고 통관하는 등 운송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범 뿐 아니라 국내 마약류 사범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류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국내 마약류사범도 지난 1999년 이후 해마다 1만명을 넘어서 대량 소비단계에 들어섰다. 종래 필로폰이 주종을 이루었던 마약류의 종류도 이제는 엑스터시, LSD, 대용약물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⁵⁾

3) 제주 국제 자유화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하여서는 2001년 12월 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참조. <http://www.chejulove.or.kr/move.htm>

4) <http://www.sppo.go.kr/drug/data/ndcs.htm>

5) 관세청은 2001년 마약밀수 개칭이래 최대(151kg)의 마약사범을 적발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62kg(326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2배가 증가한 것이며, 151kg의 마약은 약 5백만명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국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이 연구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로 인해 우려되는 마약류사범 창궐에 대처하고, 특히 제주가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출몰지역화, 거점화하는 것에 대한 형사적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종래 국제마약기구들로부터 마약류범죄가 적은 나라로 긍정적인 평판을 들었던 우리나라의 마약류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칫 국제마약조직의 마약 유통 거점으로 고착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화 한다는 것은 전국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약류사범의 출몰이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에서 마약류규제와 수사의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과제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함께 각종의 객관적인 실증자료의 제시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전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의 제기, 연구의 방법과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마약류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마약류사범의 대처방안에 관한 배경과 이해를 위하여 마약류의 개념과 종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마약류 사범의 특성을 살피고 마약류사범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들을 고찰하며 국내외의 관련법규와 함께 마약류 수사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국내 마약류대처기관들의 각종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1회 투여분 : 0.03g). 또한 최근의 경향은 밀매되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화 한다는 점이다. <http://www.customs.go.kr/>

의 마약류사범 대처의 현실을 검토하고, 국내적으로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기관과 마약류관리 실태 및 국가마약퇴치 전략에 대하여 점검한다.

제4장은 국내외 마약류밀수사범에 대한 대책을 국제적 대책과 국내적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개별적 대책을 미국, 일본, 중국과 동남아, 독일과 중남미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추적은 그 범죄적 특색에서 비롯하는 각국의 밀수사범대책과 공조수사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범죄수익박탈 제도와 국내관련 법규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고찰을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화와 관련한 마약류사범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론과 실재를 바탕으로 막 시작되는 국제도시 제주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약류사범의 일반적인 대처방안을 배경으로 하여 주로 외국인 내방객 신분의 마약류밀수범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지, 색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형사사법적 고찰이 주요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이 장의 내용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 대한 각론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제6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과 함께 국제적 마약류사범의 출입이 용이해지고, 경제적 풍요와 번영, 쾌락풍조 만연 등으로 예상되는 마약류범죄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시기적으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맞물려 수행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에 주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제로 마약류수사에 참여한 연구자가 일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라는 것이 부차적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주제를 수사상의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마약류와 마약류범죄의 속성상 마약류사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전략은 결국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유적 대처와 형사적 대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 범위를 형사적인 면으로 한정하였다.

第 2 章 麻藥類의 意義

第 1 節 麻藥類의 種類와 特性

세계 각국은 마약에 대하여 규제한다.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는 마약류 개념을 “약물사용의존욕구(Drug dependence)가 견딜 수 없게 강하고(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건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현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로 설명하고 있다.⁶⁾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 각 법률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정의했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러한 법률들을 통합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를 마약류로 개념정의하고 있으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도 제2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 를 마약류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한편 마약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규제대상약물에 속하는 약물이 있는 바, 이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환각물질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부탄가스와 이물질을 함유하는 신나, 접착제 및 도료 등이 있다.⁷⁾

1. 麻藥類의 種類

마약류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중추신경작용을 양양하거나 억제하는 약물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

6)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3쪽.

7) 이에 대한 현행규제법규에 관해서는 본 논문 “제3장 마약류사범 규제의 실태”, 53~65쪽 참조.

하여 지정된 약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에 따라 양양제와 억제제로, 약리작용에 따라 마취, 진통 등 진정제로, 의존성 면에서 중독성약물과 습관성약물로, 생성원에 따라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반합성마약으로, 그리고 제조원에 따라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규제법령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3종류로 분류한다.

마약은 다시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나눌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제, 각성제, 중추신경안정제로 나눌 수 있으며, 대마는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유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마약류⁸⁾에 대한 상세한 분류체계는 <표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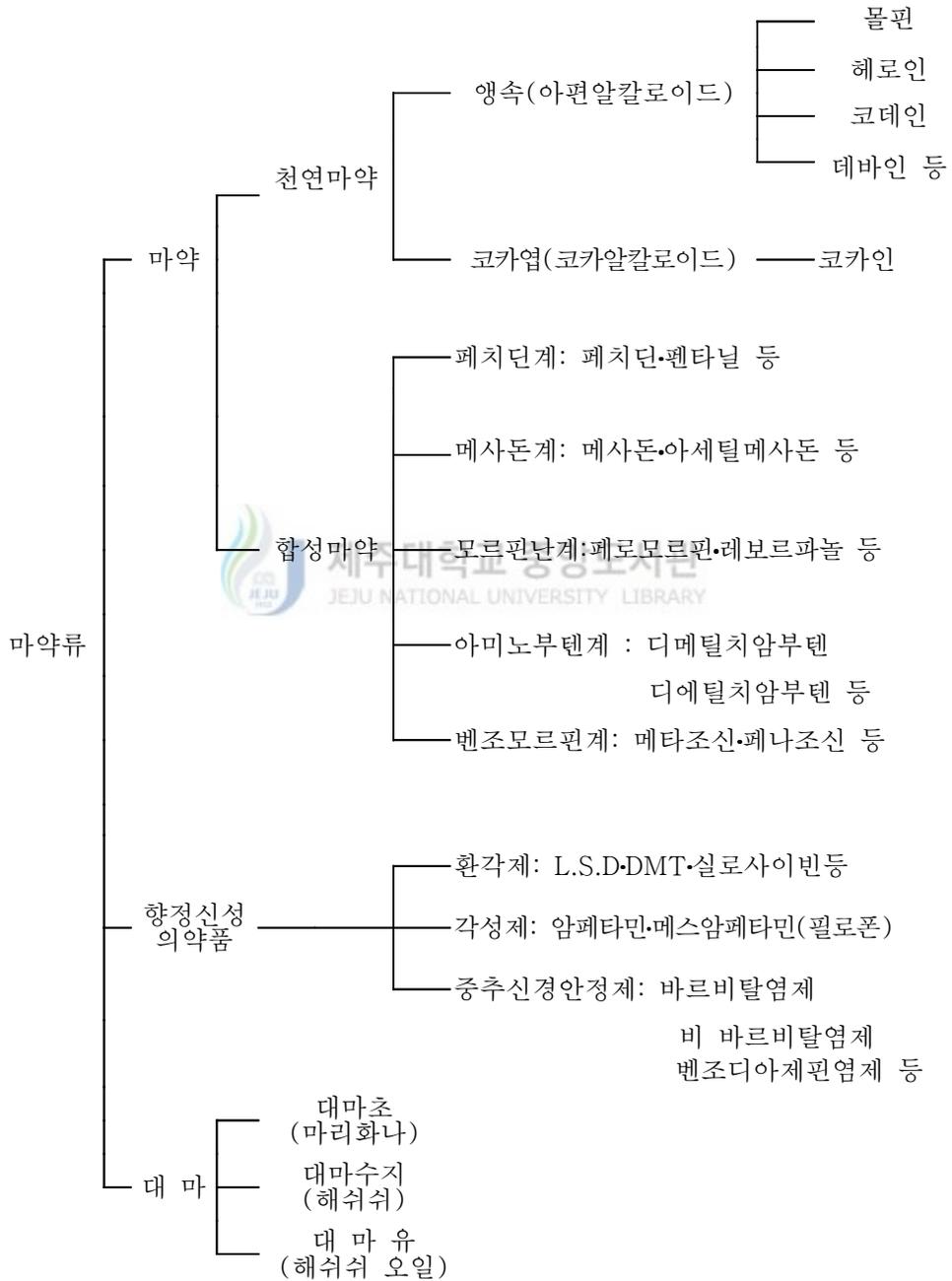


8)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정보자료집」, 1998.

대검찰청은 마약류를 마약은 양귀비(楊貴妃, opium, poppy)·아편(opium)·모르핀(morphine)·헤로인(heroin)·코데인(codeine)·코카인(cocaine)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히로뽕”)·엑스터시(Ecstasy, “도리도리”)·엘에스디(LSD)·야바(YABA)·GHB(“물뽕”)로, 대마는 대마초(marihuana)와 대마수지(hashish)로 구분하기도 한다.

<http://www.sppo.go.kr/drug/k-index.htm>

<표 1> 마약류분류체계



2. 麻藥類의 特性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각종 마약마다 가지는 성격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麻藥

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葉(동법 제2조 제2항 가목), 양귀비·아편 및 코카葉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alkaloid) (동법 제2조 제2항 나목)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가목 및 나목에서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동법 제2조 제2호 다목),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 을 제외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라목)로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천연마약에는 앵속(Opium poppy) 일명 양귀비(opium poppy), 아편(opium), 모르핀(morphine), 헤로인(heroin), 코데인(codeine), 코카인(cocaine)이 있고, 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효과를 가지면서 의존성이 적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마약으로 모르핀과 같은 정도의 의존성과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그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페치딘계, 메사돈계, 모르피난계, 아미노부텐계 및 벤조 모르판계의 5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약 74종이 알려져 있으나 그 중 페치딘과 메사돈이 주로 쓰인다.

(1) 楊貴妃 (opium poppy)

양귀비는 쌍떡잎식물로 양귀비목, 양귀비과의 두해살이풀이다. 罌粟, 약담배, 아편꽃이라고도 하는 양귀비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 또는 소아시아이다.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최고의 미인이었던 양귀비에 비길 만큼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양귀비의 줄기는 털이 없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지며 높이가 50~150cm이다. 잎은 길이 3~20cm의 긴 달걀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다. 꽃은 5~6월에 흰색·붉은색·자주색 등 여러 가지 빛깔로 피고 줄기 끝에 1개씩 위를 향해 달리며, 꽃봉오리 때는 밑으로 처진다. 꽃잎은 4개이고 둥글며 길이가 5~7cm이고 2개씩 마주 달린다. 열매는 삭과이고 길이 4~6cm의 둥근 달걀 모양이며 다 익으면 윗부분의 구멍에서 종자가 나온다. 아시아 열대·온대 지방과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양귀비의 익지 않은 열매에서 상처를 내어 받은 유즙을 60℃ 이하의 온도로 건조한 것이 아편이다.

동남아의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정부군의 잇단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재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재배, 채취 방법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열매와 식물체를 분리해 두었다가 응급 질환에 사용했다. 이를 담배와 함께 피우면 마취 상태에 빠져 몽롱함을 느끼고 습관성이 되면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은 1906년부터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를 전면 금지하였다.

(2) 阿片(Opium)

아편은 양귀비과의 2년생초인 양귀비의 열매에서 추출한 즙액을 굳힌 것 또는 이것을 가공한 것이다. 아편은 유럽 각국어인 opium의 漢譯이다. 아편은 생아편, 의약용 아편인 아편말 그리고 흡연용 아편으로 나눈다. 생아편은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어 유출되는 乳液을 채집하여 건조시켜서 덩어리로 만든 것이다. 이것을 가루로 하여 모르핀의 함유량을 10%로 조절한 것을 “아편말”이라 하여 의약용 아편으로 쓰고 있다. 아편말은 갈색의 가루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고 맛은

매우 쓰다.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물에 녹여 不溶分을 제거한 후 증발 농축하여 엑스상(狀)으로 만든 것으로서, 특별한 곰팡대를 써서 작은 램프의 불로 발연시켜 흡연한다. 아편은 주로 인도·터키·유고슬라비아·파키스탄에서 재배 제조되며, 전세계의 생산량은 약 100만kg이나 된다.

아편, 양귀비의 마취약 또는 수면약으로서의 효능은 오랜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으며,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500년대에 저술된 ‘에벨스의 파피루스 문서’에 유아가 지나치게 울 때는 울음을 그치게 하는 데 양귀비의 즙이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12세기까지 상품으로서의 아편은 소아시아만의 산물이었으나, 그 후 아라비아인에 의하여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 퍼졌다. 중국에는 약품으로서 13세기경에 전해지고 17세기에는 흡연의 풍습이 시작되었다. 1757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아편의 전매권을 잡게 되고 중국으로의 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정부의 엄중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급속히 늘어나 그 결과 영국과의 사이에 아편전쟁(1840~1842)이 일어났다. 淸國정부는 1906년에 10년 계획으로 양귀비의 재배와 아편의 흡연을 절멸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1909년 상하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밖의 나라들과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아편 흡연을 근절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을 체결했다.

아편은 약 20종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주요 알칼로이드로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파파베린, 노스카핀(나르코틴) 등이 있다. 아편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진정·진통·鎮痙·鎮咳·止瀉·최면제 및 마취보조제로 쓰이고 있으나, 남용시 남용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식욕과 성욕이 상실하고 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게되는 한편, 통상적으로 아편의 약효가 사라진 후 72시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기간이다.

(3) 모르핀 (morphine)

양질의 아편은 9~14%의 모르핀 무수물을 함유하는데, 1805년 독일의 약제사 F.W.A. Sertilnerrer가 아편에서 추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백색 침상 또는 결정성 분말이며 광선을 받으면 황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보존한다. 무취이

고 맛은 쓰다. 모르핀은 뛰어난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기 암환자의 아픔을 덜어주기도 하고, 외과수술이나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진통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편으로부터 추출된 모르핀은 코데인으로 전환되고 헤로인의 주원료로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진통·진정·진해·최면효과가 뛰어난 반면, 부작용으로 구토·발한·발열·설사 등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사용중단시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모르핀에 중독된 자들은 보통 하루에 3회 정도 이를 투약하는데, 1회 투약량은 10~20mg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는 하루에 120mg을 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이상을 투약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다.

(4) 헤로인 (heroin)

화학실험에서도 사용되는 무수초산을 모르핀에 첨가하고서 가열을 하면 모르핀의 아세틸화합물인 디아세틸모르핀, 즉 “마약의 황제”인 헤로인이 탄생하는데, 모르핀을 아세틸염화물로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이를 묽은 알칼리용액으로 세척한 후 다시 알코올을 사용하여 結晶化함으로써 얻어지며, 1874년에 최초로 제조되었다.⁹⁾ 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는 약물인 헤로인은 백색 분말로서 물이나 알코올에 녹고 쓴맛이 있다. 헤로인이라는 이름은 원래 19세기 말에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제조 판매했던 상품인데 “영웅적”이라든가 “강력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헤로인이 신체에 미치는 약리작용은 기본적으로는 진통과 쾌감이라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모르핀이 헤로인으로 바뀜으로써 약리효과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효과가 3~4배는 되리라고 이야기한다. 그 까닭은 사람의 뇌를 이물질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혈액-뇌관문”에 있다. 혈액-뇌관문을 통과하여 뇌속으로 들어가는 양을 비교하면 모르핀은 투여량의 약 2%에 지나지 않는데 헤로인은 무려 약 65%나 된다.

9) Uelmen, Gerale F. & Victor G. Haddox, Drug Abuse and the Law Sourcebook, New York : Clark Boardman Company, 1998, 2~18쪽.

헤로인은 마취제·진통제·진해제이며 호흡기능을 강하게 마비시킨다. 그 작용은 급격하고 독성이 강하다. 급성중독일 때는 호흡마비를 일으켜 사망한다. 소량을 연용할 경우 쉽게 의존성이 생겨 만성중독에 빠지고, 점차 증량하지 않으면 듣지 않게 되며,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현상을 일으킨다. 남용시 불안·불면·고민·침울 또는 發揚 등의 정신증세와 함께 구토·발한·발열·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식욕 부진·맥박급박·精神遲鈍이 되어 심신이 함께 쇠약해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세계의 약전에서 삭제되고 많은 나라에서 그 제조나 수입·사용이 금지되었다.

헤로인의 주생산지는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로 불리는 타이·라오스·미얀마 3국의 접경 산악지역이다. 이 삼각지대는 아편생산에 최적의 기후와 자연조건을 갖춘 천혜의 요지로, 특히 미얀마 동부 살윈江 동쪽의 산악지대에서 연간 약 100만 톤의 생아편을 채취한다. 이곳에는 마약왕 쿤사세력으로부터 양귀비 재배를 강요받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미국 뉴욕에 반입되는 헤로인의 80% 이상이 이곳 지역에서 생산되어 보내진다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는 쿤사·와족·링민산 등 6~7개의 조직이 있는데, 1996년 쿤사의 항복 이후 쿤사조직이 쇠퇴한 반면 그동안 군소조직이었던 와족·링민산 등이 세력을 확산하여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5) 코데인 (codeine)

아편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하나인 코데인은 모르핀의 메틸 화합물로 아편 속에 약 0.7~2.5% 함유되어 있다. 백색 결정성 분말로 쓴맛이 있다.

鎮咳·진정·진통제로서 호흡중추를 진정하기 때문에 기관지염·인두염·후두염·기침·백일해·폐결핵·신경통·痲痛 등에 사용한다. 모르핀과 유사한 작용이 있으나 마취성이 적으며 쾌감을 수반하지 않고 습관성이 되는 일이 적다. 마취·진통작용은 모르핀에 뒤떨어지지만 호흡 및 기침에 대한 진정작용은 모르핀보다 강하다. 1832년에 프랑스의 약제사 로비케가 아편으로부터 분리하였다. 남용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한다.

(6) 코카인 (cocaine)

코카인은 코카나무의 코카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다. 코카나무 속에는 약 100종의 식물이 있지만 몇몇 종만이 코카인을 얻기 위해 재배된다. 안데스산맥(해발고도 700~1,700m 되는 곳의 비가 많이 내리는 계곡 사면)에 많이 심으며, 페루·볼리비아·콜롬비아·인도네시아·스리랑카·타이완에서 재배한다. 1532년 에스파니아 사람들이 페루 산골 마을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모두 이 잎을 씹고 있었다고 한다. 하루 평균 30~50g의 잎을 석회 또는 불 뎀 재와 함께 씹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힘이 생기고 피로와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 이 작용 때문에 코카나무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이 되었으며 잉카의 신은 양손에 코카나무의 잎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코카인은 사람의 점막을 통하여 흡수되어 지각 신경 말단에 작용함으로써 통증과 미각 등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이런 기능으로 1862년부터는 수술이나 진찰을 할 때 국부마취제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코카인은 미국의 최대 남용 마약류이다. 세계 최대의 코카인 수출국 콜롬비아가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긴 국경선을 가진 미국이 코카인의 침입을 저지하는데 처음부터 애로를 겪었던 이유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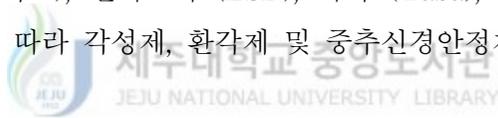
미국에서 코카인이 만연하게 된 또다른 이유는 에이즈의 유행과 관계가 있다. 이전에 헤로인주사를 돌아가면서 맞던 관습이 에이즈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코로 흡입할 수 있는 코카인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통 코카인은 빨대 같은 것을 이용해 코를 통해서 들이마시면서 비점막을 통해서 흡수시키는데 이 때문에 상용자에게서 좌우 콧구멍 사이에 구멍이 뚫려 버리는 비중격 천공의 증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비점막을 통해서 흡수된 코카인은 뇌에 직접 작용한다. 왜냐하면 코는 눈과 마찬가지로 뇌의 전방 기관이고 뇌세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을 흡입하면 삽시간에 졸음의 감소, 감수성과 운동성의 향상, 쾌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양을 흡수하거나 반복해서 사용하면 중독을 일으켜 영양장애와 함께 우울증·불안감·수면장애·만성피로·정신혼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습관성 중독시 정신적으로는 집중곤란이나 도덕감정의 황폐 등 외에 특유한 코카인 환각

증을 볼 수 있다. 즉, 벌레나 작은 동물이 몸 위에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체감환각이 일어나 온몸을 쥐어뜯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한다. 급성중독에서는 현기증·안면창백·동공산란 등으로 시작되어, 명정상태에 빠지고 정신착란·환각·환청·실신 등을 볼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나 허탈을 일으켜 사망한다.

2) 向精神性醫藥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¹⁰⁾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¹¹⁾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히로뽕”), 엑스터시 (Ecstasy, “도리도리”), 엘에스디 (LSD), 야바 (Yaba), GHB (“물뽕”) 등이 있고, 그 약리작용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및 중추신경안정제로 나눌 수 있다.



(1)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류는 대표적인 각성제 약물로서 그 종류로는 암페타민(amphetamine), 메스암페타민, 텐암페타민(tenamphetamine)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 약물이 속칭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흥분제로 냄새가 없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이다.¹²⁾ “히로뽕”의 어원은 1941년 일본국내 제약회사중의 하나인

10) “남용”은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여 쾌락추구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용법보다 과잉으로 약물을 섭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용과 혼동되는 용어로는 오용(misuse)이 있다. 오용은 약물에 관한 지식의 부족이나 실수로 인하여 그릇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정수 외 3인,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40쪽.

1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12)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나가이나가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약제인 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연구과정에서 처음 발견하였고, 1893년 처음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大日本製藥株式회사가 메스암페타민을 “philopon”(히로뽕)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면서 이 상품명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메스암페타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메스암페타민류를 “覺性劑”로 통칭하고 있다. 히로뽕을 시판한 大日本製藥株式회사는 히로뽕을 투약할 경우 졸음이 가시고 피로감이 없어지는 효과에 착안하여 희랍어의 “philoponos” 즉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단어에서 “philopon”이라는 상품명도 따왔다고 한다. 이 상품명은 일본어로 “히로”(疲勞)를 한방에 “뽕”(의성어)하고 날린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히로뽕이 처음으로 시판될 당시에는 졸음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단순 각성제로 인식되어 신문광고까지 되었으며, 전쟁 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 피로회복 및 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차가루에 히로뽕을 혼합하여 만든 정제를 출격을 앞둔 젊은 가미가제특공대원에게 복용하도록 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도록 하였다고도 한다. 이렇게 군수용품으로 생산되던 히로뽕이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한 후에는 그대로 사회로 유출되어 일본국민의 패전에 따른 심리적 허무감을 달래는 수단으로 널리 남용되었다. 이에 따라 히로뽕 중독자도 속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1951년 일본정부가 각성제 단속법을 제정하고 히로뽕 즉 각성제의 수입, 제조, 양도, 양수, 소지, 사용을 금지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임에 따라 히로뽕은 더 이상 약품이 아닌 “마약”이 되었다.

(2) 엑스티시 (Ecstasy, XTC, MDMA, “도리도리”, 搖頭丸)

1999년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으로, 화학적으로 MDMA(Methylendioxy Methamphetamine)로 통칭되는 암페타민계 유기화학물질이다. 유럽, 미국 등지에서 주로 발견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복용하면 신체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으로도 지칭된다. 그 형태는 보통 정제형이고 그 모양은 가지각색이다. 약리작용으로는 복용후 20~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경험하며, 약

효는 3~4시간을 지속하고 과다복용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3) 엘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무미, 무취, 무색으로 강한 흥분적 성분을 가진 환각제로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 등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 분산 합성화한 중추신경흥분제이다. 종이 또는 정제에 L.S.D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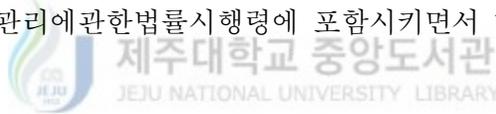
(4) 야바 (Yaba)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야바는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말기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Horse Medicine”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동안 태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청소년층과 격투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을 중심으로 남용되던 야바가 2000년도부터는 국내에서도 남용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한번 복용하면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환각효과가 강하며 중독성도 강하다. 기존 히로뽕과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다 정제나 캡슐형태여서 의약품으로 위장하기도 쉽다. 또 주사기로 투약하는 번거로움이 없는데다 가격이 저렴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캡슐 1알(0.2 g)에 태국 돈 100~120바트(3,000~5,000원 상당) 정도로 10만~30만원 하는 히로뽕(0.03 g)보다 훨씬 싸다.

(5) GHB (Gamma-HydroxyButrate, “물뽕”)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는 FDA가 공식적으로 이 제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다. 무색무취의 GHB는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

0~15분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된다.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도 몸이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단순음료가 아닌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견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 로 불리기도 한다. 이 약물은 24시간 내에 인체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미의료행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GHB와 관련해 32명이 사망했으며 3천500건의 과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GHB와 관련된 응급처치 건수도 1992년 20건에서 1996년에는 629건으로 급증했다. 1999년 11월 19일 미국 상원은 GHB의 소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장 엄격한 연방통제를 받는” 약물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GHB를 소지할 경우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HB는 2001년 3월 20일 개최된 제44차 유엔마약위원회(CND)에서 향정마약으로 분류하여 마약으로 규정된 물질로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로 규정되었다.



3) 大麻

대마¹³⁾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대마초(Cannabis Sativa)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대마에는 THC¹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同물질이 대마를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약리작용을 주도하는 물질이다. 대마(cannabis)는 Cannabis sativa라고 불

13)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라고 하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전터 도취를 초래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다.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쉐능황제대에 이미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와 섬유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도취감을 얻기 위한 남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으나 의학용으로 사용된 기록은 없다. 흡연물로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이다.

14) THC는 Tetra Hydro Cannabinol의 약어로 대마의 주성분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대마에는 THC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同물질이 대마를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가지 약리작용을 주도하는 물질이다. 대마(cannabis)는 Cannabis sativa라고 불리우는 식물에서 추출되는 성분 중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물질을 뜻한다. 칸나비스(cannabis)는 이 식물의 암꽃에서 얻어지는 것을 말하며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 해쉬쉬(hashish), 마리화나(marihuana), 헴프(hemp), 포트(pot), 간자(ganja) 등으로 불리운다.

대마는 다시 대마초, 대마수지로 나뉜다. 대마초는 재배 삼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만든 것을 지칭하며 야생삼에서 얻은 것을 일명 마리화나 또는 브항(bhang)이라고도 하는데, 마리화나의 이름은 포르투갈어의 Mariguango(취하게 만드는 것)라는 말이 와전되어 생긴 말이라고 한다.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된다. 대마의 약리작용은 남용자의 섭취량, 강도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소량의 대마를 흡연한 경우 순한 흥분제의 효과가 나타나며, 많은 양을 흡연한 경우 공중에 뜨는 기분, 빠른 감정의 변화, 환상, 환청 효과가 나타나고 극도로 많은 양을 흡연한 경우에는 중독성, 정신이상상태로 접어든다.

대마수지는 대마초의 암그루의 꽃이삭과 상부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 수지성분을 건조 또는 농축한 제품으로 일명 해쉬쉬라고도 부르며 기름(oil)형태도 있다. 대마수지는 일반 대마초보다 THC성분이 3~4배 정도가 많이 함유되어있다. 대마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기능의 장애, 면역능력 감소에 따른 저항력 저하가 일어 날 수 있고 정신적 의존이 생기며,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3. 癮藥類使用的 症狀

이상과 같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사용 시 나타나는 증상은 <표2> 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마약류사용의 증상

분 류	종 류	약리작용 (흥분/억제)	의약용도	사용방법	증 상	작용기간 (시간)	
마 약	천 연 마 약	아 편	중추신경 억 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3~6
		모르핀	"	"	"		
		헤로인	"	"	"		
		코카인	중추신경 흥 분	국소마취	주 사 코흡입	흥분, 정신 혼동, 사망	2
	합 성 마 약	메사돈	중추신경 억 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아편과 동일	12~24
		염 산 페치딘	"	"	주사	"	3~6
향정신성 의약품	메스암 페타민 (히로뽕)	중추신경 각 성	식욕억제	경구, 주사 코흡입	환시, 환청 환측, 피해 망상, 사망	12~34	
	바 르 비탈류	중추신경 억 제	진정, 수면	경구, 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감각상실등	1~6	
	벤조디아 제 핀 류	"	정신신경 안 정	"	"	4~8	
	L.S.D.	환각	없 음	"	환각, 환청 환시	8~12	
대 마	대 마	"	없 음	경구, 흡연	도취감 약한 환각	2~4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第 2 節 麻藥類의 生産과 流通

1. 麻藥類의 生産

1) 동남아시아

(1) 미얀마

마약의 대명사 아편은 미얀마가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주로 산지역의 밀림과 북동부지역 지역인 카친, 카야지역에서 생산된다. 1988년 이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생산량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에는 재배면적이 155,150ha로서 1996년 163,100ha에 비해 감소하였고, 아편생산량도 2,560t에서 2,365t으로 감소하였다. 생산된 아편은 중국, 태국, 라오스 국경지역에 설치된 비밀 정제공장에서 헤로인으로 정제되고 있으며 중국 운남성, 태국북부지역 등으로 운송된 후 각국으로 밀반출되고 있고 소량은 태국남부와 말레이시아 해안으로 유출되어 유럽, 미국 등지로 밀반입된다. 미얀마의 자체 아편소비는 생산량의 20%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1996년 1월 마약왕 쿤사(Khun Sa)의 투항 이후에도 와족, 고강족 등 소수민족들이 중국, 태국, 라오스와의 접경지역인 산, 카야, 카친주 등에서 무장군을 거느리고 밀림내에서 조직적으로 아편을 생산하고 있어 전체생산량은 오히려 10% 증가되었다.¹⁵⁾ 또한 와족, 고강족, 및 산주 동부의 무장조직들이 고순도 헤로인을 정제, 밀매하고 있으며, 이 헤로인은 중국 남부의 운남성을 경유하는 새로운 루트를 통해 상해, 홍콩을 중계지로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밀수출된다. 특히 중국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던 와족 등 소수민족이 구쿤사지역을 장악한 이후, 아편확보 및 제조물질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헤로인보다 수익성이 높은 필로폰제조 및 밀매에 주력한다.

최근에는 남미 마약카르텔과 연계, 이들로부터 헤로인 제조에 필요한 각종 화학약품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남미 마약카르텔은 아편

15)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1998, 84쪽.

을 반제품인 헤로인베이스 상태로 콜롬비아에 밀반입하여 자체공장에서 정제 후 각국에 밀매한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1991년 대마약전쟁선포와 1988년 UN협약 가입을 선언하는가 하면 매년 아편소각행사를 공개리에 실시하고 있으며, 내무부 산하에 “약물남용통제중앙위”를 설치하는 등 마약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그러나 “쿤사” 투항 이후 와족, 고강족 등 소수민족들에 의해 마약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마약경작지 또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 정부는 농민들의 생계수단인 마약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생산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고, 사실상 마약세력을 묵인하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마약통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¹⁶⁾

(2) 라오스

라오스는 주로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역인 북부 산간지역의 오돔시, 풍살리 등 10여 개 지방에서 양속을 경작한다. 1997년 재배면적은 28,150ha로 1996년 25,250ha에 비해 증가하였고 아편생산량도 200t에서 210t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생산된 아편은 대부분 태국으로 밀반출되고 있으나 중국, 미얀마, 베트남으로도 밀반출되고 있으며 육로를 통해 중국 운남·광서·광둥성으로 유입, 홍콩, 대만으로 반출된다. 또한 라오스는 마약 경유지 역할 뿐 아니라 “황금의 삼각지대”로부터 유럽 또는 인접국가로 마약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저장소 역할을 수행한다. 라오스 정부는 미국 및 UN의 지원으로 지역개발 및 대체작물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마약사범 및 거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1996년 4월 강화하여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3) 태국

태국은 육로와 공중, 해상을 이용한 아편밀매의 중심지로서 자국에서 생산된 헤로인 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헤로인의 중간경유지 역할을 담당

16) 국가안전기획부, “세계 마약류 생산과 밀매실태”,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1997, 86쪽.

한다. 아편경작은 북부지역의 치앙마이, 치앙라이, 매홍손, 메사이 등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경작되어 국경지역에서 헤로인으로 정제된다. 1997년 재배면적은 1,650ha로서 1996년 2,170ha에 비해 감소하였고 아편생산량도 30t에서 25t으로 감소하였다.¹⁷⁾ 그러나 아직도 상당량의 아편이 생산되어 미얀마의 국경지역에서 헤로인으로 정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태국정부는 경찰 마약단속국 설치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밀매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생산된 헤로인은 항공루트 등을 이용, 유럽·북미 등 주요 소비지 및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으로 밀반출된다. 특히 최근에는 상당량의 암페타민이 태국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이는 “황금의 삼각지대” 주변의 소수민족들이 헤로인보다 수익률이 높은 암페타민 제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정부는 76개 지역에 마약통제소를 설치 운용하고, 향후 마약사범 유죄판결과 동시 압수마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1997년 1월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추신경각성제와 암페타민이 초등학생을 비롯해 태국사회 각계각층에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어 암페타민 밀매 및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쿤사” 항복 이후 “황금의 삼각지대”의 소수민족들이 헤로인보다 수익성이 높은 암페타민을 제조·밀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 태국정부는 암페타민의 반입을 차단키 위해 미얀마, 라오스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신향정신성물질법”은 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유도체인 메탐페타민, 텍사페타민 등을 중전 2급마약에서 1급마약으로 등급을 올려 재분류하고 암페타민 및 그 유도체를 생산, 수입, 수출하거나 이와같은 물질 20g 이상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는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최하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한다.¹⁸⁾ 한편 태국에서는 130만명의 마약중독자들이 있고, 이 가운데 80%가 암페타민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7) 박해룡, “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23쪽.

18)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88쪽.

(4) 중국

중국은 최근 미얀마산 헤로인의 북미지역 밀반입 핵심중개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 남용자도 급증, 1995~1997년간 마약중독으로 인해 15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1월 마약왕 “쿤사” 투항 이후 태국과 미얀마 국경을 통한 헤로인 밀반입이 일시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과거 태국을 경유하던 미얀마산 헤로인이 중국남부국경을 경유, 홍콩을 통해 미국, 일본 등지로 밀반출된다. 한편 중국정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사범단속을 위해 감시활동 강화와 마약사범에 대한 공개 극형집행 등과 같은 국민계도를 실시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마약이 세계최대 아편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¹⁹⁾의 접경지역인 운남성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마약중독자가 급증하자 1997년을 “마약과의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당·정·군 통합대책기구인 “국가마약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약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경 마약단속반을 집중 투입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1997년 3월 형법개정을 통해 마약밀조·판매·운송행위에 대한 형량을 최고 사형으로 명시하고 마약원료 경작 및 밀거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였다.²⁰⁾ 또한 중국은 최근 풍부한 원료물질(염산에페드린)과 비교적 느슨한 단속으로 세계 최대의 염산에페드린 및 필로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²¹⁾ 특히 고순도 필로폰이 오랫동안 선호되어온 아편, 코카인과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주로 광둥성에 있는 비밀공장에서 제조된다. 최근에는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 외국범죄조직이 중국내에 비밀공장을 설치, 필로폰을 밀조하여 밀반출 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북한산 필로폰이 요녕성, 길림성 등을 통해 중국으로 반입되어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 일본, 우리나라 및 북미지역 등으로 밀반출된다. 한편 중국

19) 황금의 삼각지대는 동남아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말한다.

20) 중국정부는 아편1kg, 헤로인 50g이상을 취급하거나 국내외 마약밀매·밀조단의 핵심요원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하며, 에틸에테르, 무수초산 등 마약원료 밀거래시는 3년이하 징역, 양귀비, 대마 밀경작자에게는 5년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90쪽.

21) 중국은 1988년부터 필로폰 원료인 황마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소연방 붕괴이후 중앙아시아 신강지방 등에서 「염산에페드린」이 대량 밀반입된다.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91쪽.

정부는 최근 필로폰 확산·남용과 관련, 위생부와 국가의약품관리국 등을 주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무수초산, 에틸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였다.

2) 西南아시아

(1) 아프가니스탄

아프카니스탄은 서남아산 헤로인의 최대생산국으로 1997년 재배면적은 39,150ha로 1996년 37,950ha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아편생산량도 1,230t에서 1,265t으로 증가하였다. 주 재배지역은 파키스탄의 국경지역인 헬만드, 칸다하르, 헤라트, 파크티아 등 지역으로 오랜 내전으로 정부의 단속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 특히 1989년 소련의 철수 이후 아편생산이 반군들의 전비조달 목적으로 계속 확산된다. 생산된 헤로인은 파키스탄, 이란을 경유, 유럽, 미국 등 각 국으로 밀매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유국의 강력한 단속과 구 유고지역 내전으로 인해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 인접 중앙아시아를 통해 밀반출된다.²²⁾

(2)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양속재배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산 아편이 밀반입되어 헤로인으로 정제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재배면적은 4,100ha로서 1996년 3,400ha에 비해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75t에서 85t으로 증가하였다. 1979년 이전에는 합법적 용도로 면허제에 의해 양귀비 재배를 허용하였으나 아편생산 억제를 위해 1979년 아편생산금지법령을 선포하고 면허제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경작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주 재배지역은 북서부의 고돔, 아마자이, 칼라다카, 부즈너 등 아프칸과의 국경

22) 박해룡, 전계논문, 27쪽.

지역으로 90% 이상이 험한 산악지역에서 경작됨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키스탄에는 150여만명의 헤로인 중독자가 있어 상당량이 자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서 아편남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층, 연령, 소득격차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민적으로 마약류 남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파키스탄정부는 마약사범에 대한 재산몰수, 마약퇴치전담부대 창설 등을 규정한 법률을 채택(1997년 4월)하고 대마약청·세관 등으로 구성된 “대마약·밀수지역조정위원회”를 1997년 9월에 신설하는 등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3) 인도

인도는 세계최대의 합법적인 아편생산국으로 1997년까지 전국 7만여명의 농지 소유자에게 양귀비 재배면허를 발급하였고 의료목적으로 합법적인 아편을 가장 많이 생산한다. 자체 생산외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산 헤로인이 밀반입되어 유럽 및 북미지역으로 밀반출되는 경유국으로 헤로인 제조에 이용되는 화학약품도 생산·수출한다.

인도의 합법적인 앵속 생산자들은 판매수입이 낮아 일부 합법아편(15~20%, 180~300t)을 불법용도로 전환하기도 한다. 앵속재배면적은 1996년 3,100ha에서 1997년 2,050ha로 감소하였고, 아편생산량도 47t에서 30t으로 감소하였다. 헤로인은 파키스탄으로부터 편잡지방의 국경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고, 동부국경을 통해 네팔, 미얀마산이 밀수입되기도 하며,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는 반제품상태인 헤로인베이스가 서부국경으로부터 반입되어 헤로인으로 정제된다. 특히 인도는 미얀마와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로 마약밀수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도, 미얀마 국경에서 제조된 고순도 아편은 인도의 뉴델리, 뭄바이 등에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통해 “황금의 초생달지역”²³⁾에서 생산된 마약은 중동·유럽·미국 등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상당량은 인도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23) 황금의 초생달지역(Golden Crescent)은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말한다.

3) 中南美

(1) 페루

페루는 세계 최대의 코카잎 생산국으로서 반정부세력 관할지역인 Upper Huallaga 계곡에서 대부분 재배되고 있으며, 농민의 70% 이상이 합법적인 커피생산을 포기하고 수익성이 높은 코카경작으로 전환하고 있어 코카잎 밀경은 반정부세력 장악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1997년 경작면적은 68,800ha로서 1996년의 94,400ha에 비해 감소하였고, 코카잎 수확량도 174,700t에서 130,200t으로 감소하였다. 페루에서 생산된 코카잎은 대부분 콜롬비아로 수출, 코카인으로 정제된 후 각국으로 밀수출되었으나 콜롬비아의 마약전쟁 장기화로 페루내 밀매조직이 직접 코카인을 정제하기 시작하였고, 콜롬비아 밀매조직도 페루로 이주, 코카인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밀조공장은 대부분 단속이 힘든 밀림지역의 개활지나 수송이 용이한 강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일부는 도심지역에서 밀조하기도 하며 반제품인 “코카페이스트”는 리마, 쿠즈크 등지로 운송되어 정제되고 완제품은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인접국가를 경유, 각국으로 공급된다. 한편 페루에는 마약조직과 테러단체가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활동한다.

1992년 9월 마약밀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빛나는 길” 지도자 구즈만(Abimael Guzman)이 체포되었고, 투팍아마루 혁명운동(MRTA)이 그들 본거지에 마약밀매업자를 보호해준 대가로 받은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기반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²⁴⁾ 또한 페루정부는 대마약 활동을 강화, 코카인 경작지 파괴 및 대체작물 재배확대를 통하여 코카경작지를 감소시키는 한편, 코카인 생산국의 오명을 벗기 위하여 해외투자유치와 마약 단속활동 강화 등에 주력한다.

세계 2위의 코카잎 생산국인 볼리비아는 1989년 이후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코카잎 생산이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 농민들이 계속 재배한다. 1997년 경작면적은 45,800ha로서 1996년의 48,100ha에 비

24)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96쪽.

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75,100t에서 70,100t으로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코카인이 코카페이스트 상태로 콜롬비아로 반출, 가공되었으나, 최근 볼리비아에서 코카인 정제시설 증가와 코카인제품의 압수물량으로 보아 코카인원료를 볼리비아 내에서 완제품으로 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대부분 볼리비아인이나 고용운반인들에 의해 유럽 등지로 밀반출되고 아르헨티나를 경유하여 일본 등 극동지역으로 밀수된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과 합동으로 대규모의 군병력을 동원, 단속을 강화한다.

(2)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세계최대의 코카인 생산국이나 자국생산 코카인의 코카인성분 함량이 낮은 관계로 자국에서 코카인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페루 등 인접국가로부터 코카페이스트나 베이스상태의 반제품을 수입, 완제품으로 정제한다. 1997년도 코카경작면적은 79,500ha로서 1996년 67,200ha보다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53,800t에서 63,600t으로 대폭 증가하였다.²⁵⁾ 현재 중남미 전체생산 코카인 중 85%가 콜롬비아에서 최종 정제되고 있으며, 생산된 코카인은 대부분 미국으로 공급된다. 과거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운반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소형선박을 이용하기도 하고 항공기로 미국연안까지 운송한 후 바다 위의 선박에 화물을 낙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콜롬비아 마약카르텔은 지금까지 코카인 정제에 이용되는 “과망산칼륨”을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왔으나, 최근에는 베네주엘라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동화학약품을 합법적으로 수입, 이 중 일부를 빼돌려 코카인제조에 사용한다.

콜롬비아정부는 미국의 “코카인 삼각지대”²⁶⁾ 마약소탕계획에 따른 지원하에 1984년 이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1989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메테인카르텔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 1993년 두목인 “에스코바르”를 사

25) 박해룡, 전개논문, 31쪽.

26) 코카인 삼각지대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를 말한다.

살하였다. 또한 1995년 칼리카르텔²⁷⁾의 보스 “로드리게스” 형제를 체포하고 농장과 코카인 정제시설 등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국 인공위성을 활용, 대마약작전을 전개하여 경작지를 파괴하는 등 성과를 올린다. 그러나 마약밀매조직들은 정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정부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등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게릴라들은 밀조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마약 단속활동에 주도적인 인사의 암살과 폭탄테러 등을 자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3) 브라질

브라질은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에서 생산된 코카인의 밀매를 위한 주요 경유 국가로 부상한다. 이러한 밀매 활동은 주로 콜롬비아나 볼리비아 마약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브라질인의 관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콜롬비아 정부의 지속적인 마약단속에 따라 콜롬비아 조직들이 브라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에는 상파울로, 리마 등에서 약 7만여명 정도가 마약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은 5,000여개의 마약밀매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80여개의 마약도매상이 국제마약조직과 연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브라질은 코카인 제조의 필수 화학약품인 에테르와 아세톤의 주생산국으로서 이들 약품을 주변국가에 공급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브라질에서의 최종정제를 위해 코카인의 반제품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카인은 육로, 수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브라질로 반입되며 리오데자네이로, 상파울로 등 상업 중심지역을 통해 밀수출된다. 한편 브라질내 코카인 경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주요 마약생산국가와 7천km의 국경지대를 접하고 있는 아마존강 등 밀림지대 등이 유통경로의 역할을 하고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만성적 경제침체, 심각한 국내정치 불안과 정부내의 권력투쟁 등으로 효과적인 마약단속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⁸⁾

27) Peter R Andreas and Kenneth E. Sharpe, “Cocaine Politics in the Andes”, Current History, February, 1992, 76쪽.

28) 브라질 정부는 1998년말까지 총 5억불을 투자, 국경지대의 공중감시 등을 통한 마약밀매

<표 3> 세계 아편 생산량 (추정)

(단위 : 톤)

국가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황금의 삼각지대	미얀마	1,664	1,760	1,676	1,303	895	1,085	1,097
	라오스	128	140	147	124	124	167	134
	태국	2	5	4	8	8	6	6
황금의 초생달지역	아프가니스탄	2,335	2,248	2,804	2,693	4,565	3,267	185
	파키스탄	112	24	24	26	9	8	5
	이란	연간 35~75톤으로 추정						
콜롬비아		71	67	90	100	88	88	88
멕시코		53	54	46	60	43	21	71
베트남		9	9	2	2	2	-	-

자료: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2002.

<표 4> 세계 주요 코카엽 생산국 생산량 (추정)

(단위 : 톤)

연도별 국가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볼리비아	85,000	75,100	70,100	52,900	22,800	13,400	20,200
콜롬비아	229,300	302,900	347,000	437,600	521,400	583,000	730,000
페루	183,600	174,700	130,600	95,600	69,200	54,400	52,600

자료: 2002. 미국무성 발간 국제 마약통제정책보고서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2. 麻藥類의 流通

1) 國際的 實態

전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마약밀매 규모는 약 5,000억\$에 달하며, 마약류

차단 및 경찰력 증강을 통한 마약밀매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었다.

남용인구 또한 2억여만명(전체인구의 3~4%)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주 생산지가 기존의 중남미, 동남아 “황금의 삼각지대”, 서남아의 “황금의 초생달지역”등에서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알제리 등지로 급속히 확산된다.²⁹⁾ 마약의 소비지도 기존의 미국, 서구 등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 동구,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중남미 마약조직과 중국 마약조직 등이 상호연계, 아시아진출을 모색하는 등 국제범죄조직의 마약밀매 개입이 성행한다. 한편 이같은 국제사회의 마약확산 현상은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향락, 퇴폐풍조 만연에 따른 마약소비 급증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범죄조직들이 국가기관의 사회통제력약화 등에 편승한 고수익 마약밀매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 더욱 가속화한다. 중남미 등 개도국 농민들의 생계차원의 마약재배, 제3세계 분쟁지역에서 마약거래를 이용한 주요 군비조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 아편



아편은 미얀마·태국·라오스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황금의 삼각지대”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남아 “황금의 초생달지역” 그리고 인도, 베트남, 중국, 북한과 레바논(터키, 아프칸에서 반제품을 반입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비밀정제소에서 헤로인 생산), 중남미의 멕시코, 콜롬비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된다.³⁰⁾ 특히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의 아편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세계 최대로 세계 아편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7년도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4,800톤 이상의 아편이 양귀비로부터 불법 추출·생산되었다.³¹⁾

29) 국가안전기획부, “세계 마약류 생산과 밀매실태”,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67쪽.

30) 1997년 아편생산량은 미얀마 2,365t, 아프칸 1,265t, 라오스 210t, 파키스탄 85t, 멕시코 46t, 인도 30t, 태국 25t이다. 국가안전기획부, “세계 마약류 생산과 밀매실태”,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71쪽.

31) 세계아편생산량은 1995년 4,165t, 1996년 4,389t, 1997년 4,861t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2) 헤로인

헤로인은 동남아의 “황금의 삼각지대”, 서남아 “황금의 초생달지역” 그리고 중국, 북한, 중남미지역 등에서 생산된다. 동남아지역은 “황금의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태국인접 국경지역, 라오스의 태국인접 국경지역, 태국지역 등에서 생산·밀매된다. 특히 “황금의 삼각지대” 생산 헤로인의 80%는 태국, 중국, 홍콩, 대만, 이집트, 캄보디아, 체코 등을 경유 미주·유럽지역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경유 아시아, 인도네시아, 호주로 반입된다. 한편 나머지 20%는 미얀마, 태국 등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로 반출된다. 미얀마의 중국인접 국경지역에서는 연간 약 30톤의 헤로인이 생산되어, 미얀마→중국(광둥·운남성)→홍콩·마카오의 새로운 밀수루트를 통해 밀반출되고 있고, 최근 5년간 헤로인 생산의 주된 본거지로 정착된다. 또한 나이지리아 커넥션들은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헤로인을 브라질로 반입, 미국에서 밀매하고 있으며, 중국 삼합회는 태국 등으로부터 헤로인을 밀수입, LA차이나타운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공급한다. 한편 동남아지역에서는 1995년부터 헤로인사범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6년 1월 “쿤사” 항복 이후 헤로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이유로 헤로인보다 필로폰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³²⁾

“황금의 초생달지역”은 세계최대 헤로인 밀수출국인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수백톤의 헤로인이 국경지역에서 밀조되어 이란, 터키를 통해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밀반출된다. “황금의 초생달지역” 생산 헤로인은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에서 인도, 스리랑카, 이란, 터키, 루마니아, 나이지리아를 경유 미주,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일부는 반제품상태로 시리아 경유 레바논으로 반입, 정제된 후 이집트, 유럽, 미주지역으로, 인도 경유 베닝, 나이지리아, 가나 등 중서부아프리카지역을 통해 유럽, 미주지역으로 반출된다. 한편 이 지역에서 생산된 헤로인은 유럽지역 압수량의 75%, 미국내의 압수량의 20%를 차지하고, 아프리카 및 아라비아반도 등 경유지에서 적발된 헤로인의 75%를 차지한다. 또한 중남미지역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지³³⁾에서 생산되어 북미지역으로 밀수출된다.

32) 국가안전기획부, “세계 마약류 생산과 밀매실태”,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74쪽.

33)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초부터 콜롬비아 마약카르텔이 콜롬비아, 페루에서 양식을 재배한다.

헤로인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헤로인 남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은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유럽 및 북미시장으로의 마약밀수시 지리적으로 중요한 경유루트로 이용된다. 헤로인의 주소비지는 미주, 서유럽지역이나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에서도 헤로인이 남용된다. 한국은 태국이 주요 밀반입국가였으나 최근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중국 등으로부터도 밀반입되고 있어 밀반입루트가 국제화, 다변화 양상을 보인다.

(3) 코카인

코카인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며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안데스산맥 주변국가들이 주요 코카인 생산지로서 세계 코카인 공급의 98% 이상을 차지한다. 볼리비아, 페루 등에서 재배된 코카엽으로 제조된 코카페이스트가 콜롬비아로 밀수출, 콜롬비아에서 코카인가루로 최종 정제되어 북미, 유럽 등 소비시장으로 밀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볼리비아, 페루에서도 코카인으로 정제, 멕시코 등 경유국으로 반출된다.³⁴⁾ 한편 남미의 코카인을 장악하고 있던 메데인, 칼리 등 콜롬비아 마약카르텔이 강력한 단속으로 와해된 이후 라코스타 카르텔, 짜노 카르텔 등 신흥 군소마약 카르텔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 단속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신흥 마약카르텔들은 구조식에 비해 활동력이 다소 저하되나 생산, 수송, 돈세탁 등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연한 활동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남미산 코카인은 지리적 여건 및 단속이 취약한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및 바하마, 자마이카, 도미니카 등 카리브해 연안국가를 경유 최종소비지인 미국, 캐나다 등으로 반출된다. 최대소비지인 북미지역의 경우는 미국이 최대 남용국으로 남미산 코카인의 70% 이상이 멕시코 마약조직에 의해 크랙형으로 반입된다.

유럽지역은 북미지역과는 반대로 헤로인에서 코카인으로 전이현상을 보이면서

34) 세계유통 코카인의 3/4이 콜롬비아산이며, 페루는 최대 코카 경작국가이다.

급속히 확산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지역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는데 이 지역 코카인은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및 러시아 등 구소련(CIS³⁵)지역을 통해 반입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러시아 마피아들이 장악하고 밀반입한다.

아·태지역은 남미 코카인카르텔이 호주, 일본³⁶, 홍콩, 필리핀, 한국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기도하고 있으며, 호주는 소비지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내의 경유지로 부상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을 경유하여 밀반입되거나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의 현지거주 교포 및 선원 등을 통해 밀반입된다. 마약유통의 지속적인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입항 외국선박을 통해 다량의 코카인이 반입된다. 이와함께 남미에서 활동중인 홍콩 14K, 대만의 죽련방 등 중국 삼합회와 야마구찌구미, 스미요시카이 등 일본 야쿠자 등에 의한 남미산 코카인의 국내유입이 우려되고 있다.³⁷

(4)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³⁸)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북한 등 지역에서 생산되어 아시아, 미주지역으로 확산된다. 1960~1970년대까지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지역에서 주로 남용되었고(화이트 트라이앵글³⁹), 1980년대 들어서는 캐나다, 필리핀, 하와이(대만, 중국 등 아시아산)를 비롯한 태평양연안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일본 이외에 한국, 캐나다, 필리핀, 대만 등지로 투약사범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대만, 중국에서 생산되어 외국으로 밀반출되는 양이 급증하였다. 특히 1989년 이후에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국제적 유통구조가 크게 변모 대만, 중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원료가 풍부한 중국이 일본,⁴⁰ 한국 등을 일차적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시켰다.⁴¹

35) CIS: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

36) 일본의 경우는 1988년 이후부터 야쿠자조직이 남미 마약카르텔과 연계, 시장을 개척한 상태로 검거인원 및 압수량이 꾸준히 증가한다.

37) 국가안전기획부, “세계 마약류 생산과 밀매실태”,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82쪽.

38) 필로폰을 미국은 ice, 일본은 覺醒劑, 필리핀은 샤푸, 대만은 아미타민으로 통칭되고 있다.

39) 1960년대~1970년대 : 원료제공(臺灣)→밀조(韓國)→소비지(日本)을 연결하는 백색트라이앵글을 형성한다.

최근에는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도 결정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투약사범이 적발되는 등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엔마약회의, 1998년 유엔특별총회에서 메스암페타민 불법거래 문제를 주요독립의제로 다룰 정도로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향후 동북아시아의 주종 마약류이던 필로폰이 21세기 주남용 마약류로 부상할 전망이다. 필로폰 주남용지역은 극동아시아와 미국이며, 미국의 경우 하와이,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다. 특히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로폰에 카페인을 첨가하여 만든 정제형 필로폰 YABA가 생산·남용되고 있어 해외여행객 등을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된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에서 90% 이상이 밀반입되고 있는데 형기만료로 출소한 필로폰 제조사범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 동포 및 범죄조직 등과 공모, 대련·심양·위해 등에서 필로폰을 밀조, 여행자, 선원 등을 이용 국내에 밀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내 폭력조직·무역업자 등이 중국범죄조직과 연계, 밀반입하거나 북한공작원 등과 연계, 필로폰 밀반입을 기도한다. 특히 중국이 필로폰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마약관도를 상징하는 마약커넥션이 탄생했는데, 중국에서 제조한 필로폰을 국내밀매조직이 사들여 일본으로 유통시키는 소위 “신화이트 트라이앵글” 구도가 나타난다.⁴²⁾ 실례로 1996년 9월 40억원대 중국산 필로폰을 밀반입, 부산 조직폭력배들에게 밀매를 기도한 국내마약조직이 적발된 바 있으며 1998년 4월에는 중국산 필로폰을 밀반입, 판매기도한 부산, 대구, 인천 지역 마약조직 3개과 12명이 적발되는 등 중국 북경, 청도 등에서 현지 마약조직·중국교포 등이 공모,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 대마

대마는 지역과 인종에 관계없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남용되는

40) 일본정부는 1993년이래 압수한 필로폰 1,145kg중 70%이상이 중국에서 밀조된 것으로 추정한다.

41) 국가안전기획부, “세계 마약류 생산과 밀매실태”,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77쪽.

42) 국내 필로폰 밀조사범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 20~30개의 비밀정제소를 차려놓고 필로폰을 대량 밀조하여 우리나라, 일본 등지로 밀수출한다.

환각제로 미국, 멕시코,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한 온대기후 지역에서 생산되는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⁴³⁾되어 남용되고 있으며, 마리화나, 해쉬쉬, 대마 형태로 밀매된다. 대마수지를 건조, 압축시켜 제조되는 해쉬쉬는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레바논 등 중동지역과 동남아·인도·멕시코·북미지역에서 생산된다. 극동 및 동남아지역은 태국·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필리핀이 주 생산국으로, 일본, 홍콩, 우리나라 등이 주 소비국이며 최근에는 캄보디아 밀반출 대마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로 캄보디아 또는 태국과 싱가포르 왕래선박을 통해 밀반출되어 싱가포르를 경유, 전세계 소비국으로 운반된다.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지역은 전지역에서 생산된다. 인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 주요 수출국으로 경유지인 카자흐스탄·키르기스탄 등 구소련 5개국 및 지중해·페르시아만 연안국 등지에서 남용되고 있으며 발칸경로(이란-터키-동구)를 경유해 유럽시장으로,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터키로 반입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다.⁴⁴⁾



2) 國內의 實態

(1) 麻藥類 流通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일명 : 히로뽕)은 90% 이상이 중국에서 밀반입된다. 주로 과거 마약밀제조로 구속된 자들이 형기만료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동포들과 공모하여 대련·심양·위해 등지에서 밀조한 후 여행자, 중국동포, 선원 등을 이용한다. 그 외 일본, 필리핀, 홍콩, 대만, 태국 등지에서 여행객 등을 통해 소량씩 밀반입 된다.

이와같이 중국에서 대거 밀반입되는 요인은 중국당국이 아편제조는 엄격히 단

43) 대마의 최대 생산 및 밀매국은 콜롬비아, 멕시코로 1996년에는 각각 4,133t, 3,400t, 1997년에는 각각 4,133t, 2,500t이 생산되어 세계총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44) 중동, 아프리카, 인도, 멕시코 등 지역에서 서식하는 대마의 경우 약리작용이 강하며, 온대 지방 서식대마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속하는 반면 필로폰의 단속은 비교적 느슨하게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이 밀반입하는 방법은 그릇의 내부, 이중가방 속, 각종 체육기구 내부, 골프공 내부, 향문 속 등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필로폰의 1회 주사량이 0.03g으로 가격은 IMF 이전에는 10만원 하던 것이 IMF 이후에는 3~4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마약사용자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는데다 북한산의 값싼 필로폰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어 더욱 큰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실례로 1996년 9월 중국마약조직과 연계, 40억원대 중국산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여 부산의 폭력조직에게 밀매하려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안○○ 등 5명이 검거된 바 있고, 1998년 4월에는 3억원대 중국산 필로폰을 밀반입 부산, 대구, 인천지역에 밀매하려다 3개과 12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필로폰의 주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국내밀조사범들의 조직재건을 통한 활동재개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백색가루와의 전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된다.

아편은 1980년대 말부터 한·중 교류 증가에 따라 중국교포에 의한 생아편 밀반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1년 이후 점차 감소, 1997년에는 6.8kg이 적발되었으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밀반입된다. 또한 헤로인은 1990년대 들어 중국 트라이어드, 나이지리아 커넥션, 콜롬비아 마약카르텔 등에 의한 중간경유지 및 소비지형태로 국내에 밀반입된다.

헤로인은 1991년 밀반입사태가 적발된 이후 동남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과정에서 중간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지로도 이용되고있는 가운데 중국, 파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까지 밀반입된다. 실례로 1995년 10월 군사조직과 연계하여 헤로인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미얀마 진출 보석가공업자 “윤모씨” 등 2명이 적발되었으며, 1996년 1월에는 황금의 초생달지역인 파키스탄으로부터 국내소비용으로 헤로인을 밀반입한 “선모씨” 등이 적발된 바 있다. 1997년 6월에는 마약왕 군사조직의 측근조직원이 이끄는 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인 등 다국적 마약조직원 3명이 헤로인 5kg(시가 500억원대)을 밀반입하여 판매하려다 적발되었다.⁴⁵⁾

코카인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적발되었으며 국내소비용으로 미

45)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53~56쪽.

국을 통해 밀반입되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에 거주하는 남미교포 및 현지인들이 직접 휴대 반입한다. 1996년 5월 남미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25억원대 코카인(500g)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브라질교포가 검거되었고, 1997년 5월에는 남미 마약조직과 연계 300억원대의 코카인(10kg)을 국내에 밀반입, 판매하려던 7명이 검거된 바 있다.⁴⁶⁾

대마는 주로 국제우편소포를 이용하여 밀반입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거주 미국인 강사·기술자 등이 직접 소비용으로 밀반입한다. 최근에는 스페인산 대마, 이란산 해쉬쉬까지 밀반입된다. 주로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이란 등지에서 밀반입되고 있으며 1997년 2월 이란산 해쉬쉬(350g)를 특송화물편으로 국내 밀반입하려던 이란인 “마수드”(MASOUD, 30세) 등 4명이 적발되었다.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남용되고 있는 염산모르핀, 폐치딘 등 의료용 마약류는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의 관리와 감독 소홀로 남용이 확산된다.⁴⁷⁾ 특히 의원, 약국 등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일반식품과 혼합 보관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도난, 분실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부조작, 기록누락 등을 통해 불법유통, 밀거래를 한다. 수술용 진통제인 누바인(염산날부핀) 및 러미나 등 일부 대체 마약류는 제약사, 병원직원이 매매차익(애플당 납품가격의 40~50배인 4~5만원에 밀매)을 노리고 불법유통, 밀매되고 있는데 필로폰 대응으로 남용되고 있는 누바인은 생산량(연 1,200만 애플)의 40%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⁴⁸⁾

최근 마약류 밀반입과 관련하여서는, IMF로 인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한탕주의식 범죄심리가 확산되어 일반인의 마약밀매 사례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약 10%가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및 환각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국가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유학생들을 포함하여 실직한 20~30대까지도 본드 등을 남용한다. 또한 IMF체제 이후 마약류공

46) 이들은 가공 원목 중간에 흠을 파고 코카인을 은닉 후 밀반입, 일부는 국내에서 밀매하고, 나머지는 일본 야쿠자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되었다.

47) 의료용 마약류는 효율적 감시와 감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에서 국공립병원, 보건소, 수입·제조업소를 관리한다. 각시·도 지자체에서는 병원, 의원, 약국, 도매상 등을 관리한다.

48) 1998년 2월 누바인 5만애플 불법유통조직을 적발했다.

급사범들이 불황타개책으로 박리다매전략을 구사, 마약가격을 대폭 인하 공급함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및 고학력 마약사범이 급증한다.⁴⁹⁾ 부산, 대구 및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필로폰 1회분(0.03g)이 종전의 10만원에서 3~4만원대까지 대폭 하락 거래되고 있어 마약류 남용계층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1만엔에서 2천엔으로 급락하였다. 특히 유의할 점은 과거 1988~1989년에 1회분이 5,000원까지 하락하였을 때에는 청소년층의 마약범죄 발생이 빈발하여 사회문제화되었던 것을 회상하면 마약가격의 하락은 마약사범의 급증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 중국으로 진출한 마약사범들이 현지 중국교포들을 통해 북한인을 직접 접촉, 고순도·저가의 북한산 마약류를 구입 밀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북한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가능성이 점증한다. 특히 국내마약조직들은 흑룡강성 오지의 농가와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중심으로 은폐된 비밀공장에서 필로폰을 밀조, 한국·일본 등지로 밀매한다.⁵⁰⁾

필로폰은 9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마약사범들이 자금난 타개를 위해 마약밀매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밀매업자들이 판매경쟁과 사업자금부족 등으로 필로폰과 승용차, 카메라, 흑염소액기스 등을 물물교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마약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절도 등 강력범죄를 일으킨다. 헤로인, 코카인, 해쉬쉬 등이 동남아, 중남미 등지에서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유통물량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등 외국산 마약류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데도 대부분 국민들이 마약피해의 불감증에 걸려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순수한 국민들의 우려를 가중시킨다.

한국을 필로폰 최대 수출국으로 지목했던 일본은 지난 1982년 한국에 한·일 마약회의 개최를 요구한 이래, 1998년 4월 한·일 마약대책회의에서 양국은 중국으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 급증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협력채널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금년에도 제15차 한·일마약류회의를 개최한 바

49) 1998년 5월 현역국회의원의 아들, 대기업임원 부인 등 마약사범 17명 적발 등 남용계층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50)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60쪽. 최근 중국에서 북한산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되고 있는 마취주사제 「프로카인」의 유입이 급증된다.

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중국의 한국 “자유관광지역” 지정으로 중국으로부터의 필로폰 등 마약류의 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에는 러시아인의 제주 무비자 입국 및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의 입국 완화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어 외국 산 마약류의 밀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폭력조직 및 소매치기 전과자 등이 국내경기 불황으로 인해 활동기반이 약화되자 조직운영자금 확보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마약밀거래 사업에 적극 개입한다.⁵¹⁾

마약의 밀매과정에서 국내침투 기반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활동강화와 함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 여파로 동남아 마약조직 등이 마약밀매에 본격 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과 연계, 마약밀매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필리핀, 호주, 미국, 브라질 등 해외에 진출한 마약·폭력조직들이 현지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밀매 사업에 적극 개입할 우려가 있다.⁵²⁾ 특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환율상승 이전 가격으로 밀매되고 있어 국내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국·미얀마 등지에서 남용되는 정제형 필로폰 “야바”의 국내 밀반입의 확산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IMF체제 이후 실직한 불법체류 외국인(약 9만여명)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마약밀매에 가담하고 있어 이란·파키스탄 등 마약생산 국가들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있다.⁵³⁾ 이와 함께 중남미 마약카르텔, 동남아 마약조직 등 국제마약조직들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편승 불법자금세탁을 위해 국내금융시장 등에 본격 개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이들이 한국을 자금세탁 기지화 할 경우 국내금융질서 교란 및 마약류의 대량 국내유입이 우려된다.

(2) 國內犯罪組織의 麻藥密賣動向

관세청에 의하면, 최근들어 밀수 마약종류가 종전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대마 등에서 헤로인, 아편, 해쉬쉬, MDMA(엑스타시), YABA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

51)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62쪽.

52) 범서방과, 양은이과, 풀망과 등 국내폭력조직 및 재미교포 마약조직 등과 연계 마약밀매를 기도다가 적발되었다.

53) 1996년 나이지리아 등 6개국 23명이던 것이 1997년 이란 등 11개국 41명을 적발했다.

며, 여행자 신변, 휴대품으로만 소량 반입되던 것이 최근 국제우편, 특송화물, 수입 화물 등으로 반입경로가 확대되면서 수입화물을 이용한 대량밀수도 적발되고 있는 등 그 밀수수법이 지능화·교묘화·대형화되고 있다. 또한 마약 출처국이 중국, 태국 등지에서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나마, 네덜란드, 남아공, 캐나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마약 밀수사범도 내국인, 미국인 뿐만 아니라 태국인, 중국인,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이란인, 남아공인, 러시아인, 캐나다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이전에는 한 건도 없었던 MDMA, YABA 등 신종마약 밀수가 2000년부터 급증하여 2000년부터 2001년10월까지 MDMA 1,000정, YABA 4,010정이 적발되었다.

최근 국내 폭력·마약조직들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IMF여파로 인한 유흥업 소 불황 등 경기침체로 자금원이 경색됨에 따라 마약 밀수·밀매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매치기 조직까지 개입하여 밀매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의 경우 전체 마약사범의 0.5%인 31명이 폭력조직이었고 1997년의 경우 40명이 조직폭력으로 확인되는 등 29%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적발된 폭력조직이 일부 극소수임을 감안하면 국내 폭력조직의 마약밀매 가담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부 국내 폭력조직 및 소매치기 전과자들은 국내침투를 본격화하고 있는 일본 야쿠자, 홍콩의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⁵⁴⁾과 연계, 수익률이 높은 마약 밀매행위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1994년도에 양은이파 부두목 이모씨가 LA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적발된 바 있으며, 1997년도에는 국내 폭력조직 “전주 금암동파”가 남미 마약범죄조직과 연계 코카인 1.5kg을 밀반입하여 판매를 시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폭력조직원(311개파 6,600명)중 일부가 해외로 진출하여 주로 현지 교포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 물의를 야기하고 있어 국가권위를 실추시킨다. 특히 해외진출 폭력조직들이 현지 범죄조직과 연계, 마약밀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자행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마약류 국내 반입 가능성이 상존한다.

중국에 진출한 마약 폭력조직들은 중국 심양 등지에 비밀정제소를 차려놓고 국

54) 러시아 마피아(마약, 무기, 밀수, 돈세탁), 중국계 삼합회(마약, 밀수, 위폐, 인신매매, 총기, 돈세탁, 불법밀입국), 일본 야쿠자(마약, 인신매매, 도박, 총기)등에 의한 초국가적 범죄가 계속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한국일보(1998. 7. 22, 1998. 12. 26), 중앙일보(1999. 10. 3), 조선일보(1999. 10. 10).

내 밀반입을 기도하는 등 국제화 양상을 보인다. 호주 진출 “백호파”는 일본 야쿠자와 결탁하여 교포 및 유학생 상대로 마약밀매를 한다. 또한 해외진출 국내폭력조직원들은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들과 연계, 국내에서 활동중인 소속조직원들을 활용 마약밀조·밀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해외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들은 국내폭력조직과 연계⁵⁵⁾ 필로폰을 밀조, 국내밀반입을 기도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된다. 한편 국내 마약남용자들은 그들이 범죄로 인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가족들의 이불, 옷 등의 반입물에 은닉한 필로폰을 매일우유 등의 은박지를 말아 손톱 밑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 등을 이용 감방에서의 지루함을 잊기 위해 마약으로 인한 환각생활을 누린다. 이들이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도 자유롭게 마약을 즐기는 상황인데도 교도관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는 이들의 마약밀반입을 예측하면서도 사회에 있을 때 연계된 관계로 마약 밀반입을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마약사범 관리의 허점을 노출시킨다. 일반 마약사범들이 공급에 혈안이 된 것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물건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잡혀서 구속되기 직전까지는 마약밀매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에 있을 때보다도 더 자유롭게 마약을 구입하기 쉽다는 것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의 주장이다.⁵⁶⁾ 영국에서는 상습절도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여성이 출소시에는 마약중독자가 되어 나오는 것을 언급하여 신문의 주요기사거리가 되었다. 수형자들 역시 약물을 폭넓게 구할 수 있다는 점과 어떤 교도소에서는 교도소 밖보다 더 쉽게 약물을 찾을 수 있음을 보고한다.⁵⁷⁾ 교도소나 구치소의 마약사범관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55) 국내 폭력조직 「서방파」, 「목포파」, 「대전파」 등은 호주, 필리핀, 러시아, 미국 등 8개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있다.

56) 1998년 8월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소매치기 「호진이파」 두목 손모는 스스로 구입한 마약을 00우유의 은박지를 말아 손톱 밑을 통해 투약한 후 자랑스럽게 “약은 얼마든지 있으니 맞을 생각이 있으면 말하라”고 공개적으로 자랑을 할 정도로 마약의 감방내 전달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7) 이훈규·최병각,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93쪽.

第 3 章 麻藥類事犯과 規制實態

第 1 節 麻藥類事犯

1. 概要

마약류사범은 마약류의 제조, 판매, 투여에 의하여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약류사범이라 함은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자만을 한정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마약류 사용자보다는 마약류의 제조, 판매, 운반 등으로 마약류의 국내외 밀반입, 밀반출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라고 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상용자에 대한 치료적, 감호적 문제를 논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법 제2조 제2항이 말하는 “마약류범죄”는 마약 등 규제약물을 수입·수출·제조·재제·소분·양도·양수 및 매매의 알선·소지·소유·관리·사용·투약·장소 등 제공에 이르기까지 약물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범한 자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특례법에서 새로 삽입된 “업으로서 행한 불법수입 등”의 죄(동법 제6조), 와 “마약류로서의 물품의 수입”의 죄(동법 제9조), “선동 등”의 죄(동법 제10조)도 포함하여 마약류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범죄는 마약법 제60조 등의 죄를 “업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이라는 의미는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수에 걸쳐 이러한 행위들을 실제로 행한 것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⁵⁸⁾

특례법 제7조와 제8조는 이른바 “돈세탁행위(Money laundering)”를 역시 약물범죄로 규정한다. 돈세탁행위라 함은 범죄로부터 취득한 이익 또는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그 출처를 가장하거나 진실된 재산관계의 성질을 은닉하여 수사당

58) 이병기·이경재,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35~136쪽 참조.

국의 추적을 피하고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이나 재산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계 각국의 형사법과 국제조약은 이러한 위법한 돈세탁행위를 범죄화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⁵⁹⁾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1950~1960년대에는 아편과 메사돈이, 1970년대에는 대마초가 주종을 이루었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사범이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중심 마약류로 남용된다. 1960년대 말부터 밀제조되어 주로 외국으로 수출되던 메스암페타민은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출 루트가 거의 와해되자 국내시장으로 그 판로를 돌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내 유통이 급증하면서 많은 중독자가 양산되었고 이로 인한 환각범죄까지 빈발하여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사회부의 마약수사권을 검찰로 이체하여 일원화된 강력한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세관 등 법 집행 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및 치료·재활업무를 담당하고, 외교통상부는 마약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협력 관련업무를, 국가정보원은 마약관련 국제정보업무를 담당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

2. 癮藥類事犯의 特性

마약류사범의 특성이라 하면, 마약류를 실제 사용한 자의 특성과 이 연구의 직접 대상인 마약류의 제조, 판매, 운반 등으로 마약류의 국내외 밀반입, 밀반출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자의 특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마약류사범의 범죄행위는 마약류상용자를 전제로 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약류상용자의 증상과 그들의 행동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곧바로 그들에게 마약류를 조달하는 마약류사범을 포착하기 위한 징표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마약류상용자의 증상과 행동양태는 실제로 자주 수사의 단서로 작용할 것이다.

59) 김달남, “약물범죄수익박탈에 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7, 62 쪽.

1) 麻藥類 常用者の 症狀

마약류 투여를 하면 인간에게는 신체적 조건(남녀, 노소, 건강, 연령)과 마약류의 종류, 투여량 및 습관성(초범, 상습범) 등에 따라 증상이 다르나 일반적·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의존성과 금단현상이다.

(1) 依存性 (Dependence)

약물의존(Drug dependence)은 생체와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물섭취를 중단하려 하여도 끊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약물의존에는 정신의존(Psychic dependence)과 신체의존(Physical dependence)이 있다. 정신의존은 어떤 약물의 특정 약리효과를 체험하고 그 후로 계속하여 그 약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 상태를 말하며, 이전에는 습관성이라고 했다. 신체의존은 생체와 약물의 상호작용 결과, 생체가 특정약물의 약리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소실되면 신체기능의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적응실조 상태가 되어 병적증후 [퇴약증후 : 퇴약증후 또는 이탈증상은 약물의 혈중농도가 저하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신체의존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단증상(abstinence syndrome)과 신체의존이 없이 정신의존시 발현하는 재발현상(flash back) 등이 있다] 를 나타내는 신체적 이상상태를 뜻한다.

결국 약물의존은 약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하여 정신적 효과를 얻으려 하거나, 약물의 남용중단으로 야기되는 고통, 불안 등을 피하기 위해 약물을 충동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행동양상으로 나타난다. 통상 약물의존은 정신의존에서 시작하여 약물의 종류, 섭취조건 등에 의해 신체의존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다.

(2) 禁斷現象

사용하던 마약류를 중단하면 정신적·신체적 이상이 발견되는 증상을 말하며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이 오며 공황상태가 되고 신체적으로 오심, 구토, 설

사와 반신불수적인 팔·다리의 움직임은 나타내며 중단하면 복근에 통증으로 인해 복부를 구부려 안고 몸을 새우같이 꼬는 태아자세를 취하며 고통스러워 한다.

2) 麻藥類 常用者의 行動變化

(1) 生活態度 變化

자신도 모르게 약물구입과 사용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며 약 기운이 떨어지면 육체, 정신적으로 불쾌감이 오므로 다시 약물을 사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져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며 쾌락으로 인한 무릉도원이나 천국을 해마다 현실로 돌아오면 지겹고 비참함을 느껴 다시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또한 약구입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므로 거짓과 핑계, 범죄 등을 유발하게 되며 “될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



(2) 醫學的 合併症

위법행위 도중 성격변화로 인한 빈번한 싸움과 사고, 자살기도 등 신체에 손상을 가져오며 의학적 지식이 없으므로 약물을 가늠하지 못하고 또는 타성으로 인해 약물을 과다 투여하게 되어 맥박, 혈압, 체온변화를 가져오고 경련,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주사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여 정맥염, 간염, 패혈증, AIDS 등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신체가 허약하고 면역에 약해 염증, 골수염을 유발하기 쉽다.

(3) 亂暴行爲

판단력과 조절능력의 마비는 약물중독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특히 이러한 마비는 장기적으로 우울증·폐쇄공포증 등의 심리학적 병리현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약물중독은 판단력과 조절능력을 마비시키고 피해의식으로 행

동이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며 피해망상증 유발로 신변보호를 위해 흉기를 소지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을 자기에 대한 가해자로 인식, 범죄행위를 범하게 된다.⁶⁰⁾

第 2 節 痲藥類 · 痲藥類事犯 規制의 實態

1. 痲藥類 問題의 認識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격변을 겪었으며, 이는 마약류 사용의 좋은 토양이 되어 시대에 따라 많은 종류의 마약류들이 남용되었다. 마약류 남용문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의 단속으로 효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방치할 경우 언제든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은 새로운 마약류의 확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마약류가 확산되어 과거에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것에서 이제는 모든 계층이 마약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구입 또한 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의 마약류 문제는 법적 제재의 강화와 단속인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속망을 피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1999년에 마약류 지수가 23이 되어 우리나라의 마약류 문제가 이제 위험수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적,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통제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치료보호의 강화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마약류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과거 우리와 관계된 마약류 거래의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로부터 일본으로 유입되는 메스암페타민이 근절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으로의 수출이 막힌 메스암페타민의 판로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남용자를 찾게 되면서 국내의 마약류문제는 점점 심각하게 되었으며, 이제

60) 경찰청, 「마약류사범 수사실무」, 2001, 71쪽.

는 우리나라가 마약류의 수입국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마약류 남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왔으며 특히 단속차원에서는 대검찰청 마약과가 중심이 되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일선 검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의 주관하에 대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마약의 단속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서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마약류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마약류퇴치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참여하에 마약류에 대한 기본정책인 “국가마약퇴치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⁶¹⁾

2. 國家 麻藥類退治 戰略과 規制法規

1) 國家 麻藥類退治 戰略



우리나라는 일제 점령기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마약을 투여 받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월남파병기인 1965년 이후부터 대마초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속칭 화이트트라이앵글이라는 “대만(염산에페드린 등 원료제공)→한국(히로뽕 제조)→일본(마약 소비국)”을 잇는 마약공급·제조·소비지역의 역할을 하였다. 1985년 중반이후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미국 등지의 유학생들과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등이 공급되고, 그 동안 제조국이던 한국은 마약소비국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검찰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마약류퇴치 유관기관은 “국가마약퇴치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각 유관부처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마약류 퇴치정책을 골간으로 하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61) 신의기·강은영·이민식, “마약류 사범 실태-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58~59쪽.

동향을 감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종합하여 최종 목표와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한 것으로,⁶²⁾ 향후 우리나라 마약사범대처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기본구도는 ① 마약류공급 강력 차단, ②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③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들의 유기적이고도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마약류 없는 사회건설 및 국제적 마약퇴치·협력 모범국가라는 최종목표를 이룩하자는 것이다.⁶³⁾

이를 위한 장기적, 단계적 전략으로는 정부부처·사회단체·국민 등 각각의 행동주체들에게 비전과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 마약류 퇴치 노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단계별 마약퇴치 계획에 발맞추어 이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설정, 함께 추진하도록 고려하였다.

2) 現行 麻藥類 規制法規

(1) 關聯法規 概要



현재 마약류의 관리와 규제에 관한 법은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법이다. 그러나 통합법에 의해 통합되지 않은 다수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 1995년 12월 6일 영리목적의 마약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마약류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추적·환수하여 마약류범죄를 막기 위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본드 등의 흡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신나, 본드 등의 흡입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반 의무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가운데 일부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62) <http://www.sppo.go.kr/drug/data/ndcs.htm>.

63) 대검찰청, 「국가마약퇴치전략」, 1999, 8쪽.

형법에서의 마약류 관련 규정은 “아편에 관한 죄”에 관련된 규정들이다. 아편에 관한 죄는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소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의 규정은 아편 뿐만 아니라 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인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에서 마약의 정의에 “아편과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법의 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법 가운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은 마약류의 불법거래로 얻은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점차 조직범죄화되어 가는 마약류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조직범죄 집단의 수입을 몰수함으로써 조직의 고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방법이다.⁶⁴⁾

(2) 麻藥類管理에 관한 法律

이 법은 기존의 마약류에 관한 법들이 마약류의 공급과 사용의 통제를 통하여 마약류의 남용을 막겠다는 통제주의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기존의 법들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마약류의 통제를 확실히 함과 동시에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기존의 마약류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라 할 것인 바, 그 하나는 현행법률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교부하거나 대마를 수수·교부 또는 흡연(섭취)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⁵⁾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법률이 처벌하고 있었던 “의료인 등의 마약류 중독자 보고의무 및 처벌규정”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에서는 폐지된 마약법 제49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2조, 대마관리법 제12조의 2는 치료보호기관의장 또는 의료인은 환자가 마약류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64)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계논문, 78~79쪽.

65)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폐지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의 2항에서 규율했었다.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독자의 주소·성명·연령·성별 및 중독된 마약류의 품명을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마약의 경우(제64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대마(제21조)와 향정신성의약품(제44조)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중독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토대로 하여 첫째, 의료인의 보고의무 및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중독자 발생예방에 효과가 없고, 둘째, 치료재활에 전념해야 할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인하여 신고 후의 보복행위 등이 두려워 보고를 기피하는 실정이며, 셋째, 의료인의 환자비밀보호규정과 상치하며, 넷째, 이 규정에 의거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신고된 사례가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 등을 폐지의 논거로 한다. 통합법률 제정시에 이와 달리 보고의무규정은 의료기관의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고의무규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내지 보고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대한 의무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마약류 중독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파급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건행정상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이 규정을 존치 하자는 반론도 있었다.⁶⁶⁾

그러나 이 규정의 폐지에 대하여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독자처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법정책을 견지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마약류의 확산방지 및 중독자들에 대한 보건정책 수립의 차원에서 신고의무 규정은 필요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의사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의료업무처리중의 법규위반행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위주로 형량을 낮추고 치료 중 신고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운영상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⁶⁷⁾ 벌칙도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벌로 대체하거나 나아가 제재 규정없이 신고의무만을 부과하는 규정이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6) 조은석·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18쪽.

67) 일본의 마약단속법 제58조 제2항, 제71조에서는 의료인들의 신고의무와 위반시의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록 법에 의해 보고의무조항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독자의 실태 파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同法에 규정된 업무보고 규정이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중독자 판별검사 결과보고 등의 규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선 보건행정 당국은 치료중인 중독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가 마약류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통계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⁸⁾

이 법의 규제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의 생산, 유통, 사용 모두를 형사처벌하여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사용에 관계된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이 법은 마약류의 관리를 적정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담고 있다.⁶⁹⁾

(3) 麻藥類不法去來防止에 관한 特例法

현재 마약류의 관리와 규제에 대한 법제도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1995년 12월 제정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입국·상륙허가의 특례 및 관세절차의 특례 조항(통제배달, Controlled Delivery)규정, 마약자금 세탁 금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마약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몰수 및 추징을 위한 보전절차, 국제공조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됨과 동시에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마약류범죄의 효율적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틀이 되고 있는 1988년 비엔나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95년 12월 6일 제정된 同法은 영리목적의 마약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고, 마약류범죄 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외국의 몰수·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국제적 협력 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들의 방

68) 조은석·김광준, 전계논문, 226~227쪽.

69)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계논문, 82~84쪽.

지를 통하여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예금비밀보호원칙 때문에 마약자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1988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에 따라 마약류자금의 돈세탁을 막고 마약류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다. 돈세탁 단속의 필요성은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의 출처를 위장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바젤선언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확립되어 있다.⁷⁰⁾

우리나라는 돈세탁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금융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들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부정 부패와 조직범죄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장시키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⁷¹⁾

(4) 기타 癲藥類 規制法規

①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이 법 제11조에서 마약사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58조 중 마약과 관련하여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항). 또 2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와 제60조 중 마약과 관련하여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마약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즉 소지·재배·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1호), 그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

70) 이에 대해 상세한 것은 조병인, “자금원위장행위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7권 제3호, 1996 참조.

71)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계논문, 93~94쪽.

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규정은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에 비하여 그 중독성이나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범죄성·파괴성이라는 면에서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류가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에서 볼 때 본 규정의 합리성은 의심스럽다는 견해도 있다.⁷²⁾

마약류의 의존성은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으로도 마약류 가운데 의존성이 강한 헤로인의 제조, 수출입 등의 행위를 다른 마약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⁷³⁾ 일본의 마약취체법은 헤로인의 제조행위를 다른 마약에 대한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64조). 따라서 이 범죄의 고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질이 디아모세틸모르핀 또는 그 염류라는 사실 또는 헤로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마약 중에서 특히 독성이 강한 약물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⁷⁴⁾

② 麻藥類犯罪等과관련된保全節次等에관한規則

1996년 2월 제정된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은 몰수보전 및 추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실명거래및예금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실지명예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가·차명예금거래 금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년 9월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은닉 금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날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72) 이은모, “약물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144쪽의 각주 213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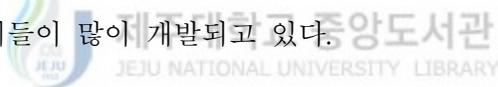
73) 조은석·김광준, 전계논문, 265쪽.

74) 김상희·정진수,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65쪽.

③ 有害化學物質管理法

법률상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소년층을 상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본드 등 유해화학물질의 남용은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8월 1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규제대상은 유해화학물질로 유독물·취급제한 유독물·관찰물질이 있다. 유독물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취급제한 유독물이라 함은 유독물 중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또 관찰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제2조). 유해화학물질은 마약류 남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유해화학물질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④ 特定犯罪申告者等保護法

마약류거래의 경우 대단위 조직 또는 거래를 검거하여 소탕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자 또는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조력없이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내부자 또는 거래 일방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에 조력할 때 가장 주저하는 이유는 자신의 처벌가능성과 조직 및 거래상대방의 향후 보복이다. 따라서 미국 등에서는 조력자에 대하여 기소면제 등 소위 “유죄협상(Plea Bargaining)”과 신변보호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마약류거래 수사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그 입법이 미루어지다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7호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되었다.

同法에서는 마약류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의 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음과(제1조), 국가는 범죄신고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

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4조)고 선언하고 있다.

同法은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에 조력한 경우를 보호대상 행위(제2조 제2호)로 하고 있고, 그 보호대상은 위와 같은 보호대상 행위를 한 자와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기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언(제10조) 등 재판시 증언상의 특례규정(제11조, 제12조)을 두고 있고, 검사·재판장·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와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고 범죄신고자 등과 그 친족은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13조). 또한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고를 고취하고 있다. 마약류범죄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자의 신고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통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⁷⁵⁾

3. 麻藥類事犯 搜查體系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의 수사기관으로는 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등이 마약사범의 수사기관으로 활동중이다.

75)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계논문, 101~104쪽.

1) 檢察廳

검찰은 수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기관으로 마약사범에 관하여도 타기관의 수사를 총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으로 1989년 2월 13일 대검찰청 강력부에 마약과를 신설하였고, 보사부소속 마약감시원 59명을 검찰로 전직시켜 13개 본청 및 3개 지청에 마약수사반을 신설하는 등 전문마약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마약류사범을 단속한다.

1989년에는 도핑컨트롤센터 등 감정제도 도입, 1990년에는 전국 마약수사반 전산 단말기 설치, 1991년에는 메스암페타민 소변검사시약 등 첨단시약개발, 1999년에는 마약류사범 출소자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의뢰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⁷⁶⁾

2) 警察廳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마약수사과가 있고, 마약수사1계에서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책 및 기획수사, 마약류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 마약범죄자료 수집분석 업무를, 그리고 마약수사2계에서 마약류범죄 수사지도조정, 마약수사요원에 대한 교육지도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경찰청에는 마약수사전담기구로 마약과가 있고 각 지방청에는 마약계가 있으나 이는 날로 확산되는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취약한 수사체계라 할 수 있다.

1989년도에 주요 시 소재 경찰서에 마약수사전담요원을 지정하였고, 1999년 10월말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마약류 수사전담요원 1,025명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전체 마약류사범 10,589명 중 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은 6,139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말 현재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4,619명을 검거하였으며, 그중 마약사범은 17.2% 795명, 대마사범은 26.4% 1,220명, 향정신성(필로폰 등)은 56.4% 2,604명을 검거하였다.⁷⁷⁾

76)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8, 69쪽.

77) 경찰청, 「마약류사범수사실무」, 2001, 120쪽.

3) 關稅廳

관세청은 공·항만 등에서의 마약류 등을 포함한 밀수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주무부서는 조사감시국 산하에 마약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마약조사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규제한다.

-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 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한다)에 대한 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각 세관에서 운용하는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탐지견 훈련시설·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4) 食品醫藥品安全廳

식약청에도 마약관리과가 있다. 그러나 식약청 마약관리과는 그 업무가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주로, 국민보건과 관련한 마약류의 취급과 규제에 한정되어, 부여된 사법경찰권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 수사기능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식약청은 과거 마약관리과에서 마약류사범을 단속하였으나 1989년도에 마약감시원이 검찰로 이체된 이후에는 사법경찰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지 합법의료용 마약류관리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

4. 麻藥類事犯 團束狀況

국내 유통 마약류로는 1950~1960년대에 아편류와 메사돈이, 1970년대에는 대마초, 1980년대 이후부터 메스암페타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88년도에 이르러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이 3,939명으로까지 급증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 뒤 1989년도 이후 일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5년도부터 다시 연평균 18.5%의 증가세로 전환하여 1999년도에 최초로 1만명대를 돌파하였고 2002년도에는 10,673명에 이르렀다.

마약류사범 단속자 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최근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남용계층 또한 과거 전통적 취약 직업군에 속하던 무직, 유흥업종사자,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 건전 계층인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료인 등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역적·계층적 확산에 따른 자연적 요인도 일부 있으나, 마약류사범의 은밀화·비노출·범죄화·지능화·점조직화 속성에 비추어 검찰을 비롯한 경찰·세관 등 단속기관의 헌신적인 퇴치의지를 바탕으로 폭넓은 정보수집과 지속적인 고도 강력한 단속 활동, 특히 마약류 공급 및 수요조직 상·하선 전반에 걸친 집요한 공범 추적수사 및 성공적인 위장거래수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40대의 청·장년층이 전체사범의 84.8%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이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⁷⁸⁾

1) 麻藥類事犯 趨勢

199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사범이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명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마약류사범의 분포 비율은 1995년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2년도에는 향정사범이 74.2%를 차지하였고, 대마 및 마약사범은 각 18.4%, 7.4%를 점

78)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22쪽.

유하여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다.

사범별 추세를 살펴보면, 대마사범과 마약사범은 1998년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1년도에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2002년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향정사범은 1995년도 이후 연평균 30% 이상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1년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4년연속 전체 마약류사범이 1만명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지속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직자 및 사업실패자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사회전반의 쾌락추구계층의 증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밀거래에 개입하는 새로운 사범의 발생 그리고 당국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 활동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5> 마약류사범 추세

(단위 : 명)

연도별 마약류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8,350 (20.2)	10,589 (26.8)	10,304 (-2.7)	10,102 (-2.0)	10,673 (5.7)
대마	1,606 (23.4)	2,187 (36.2)	2,284 (4.4)	1,482 (-35.1)	1,965 (32.6)
마약	892 (-25.7)	923 (3.5)	954 (3.4)	661 (-30.7)	790 (19.5)
향정	5,852 (31.7)	7,479 (27.8)	7,066 (-5.5)	7,959 (12.6)	7,918 (-0.5)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2) 年度別・類型別 麻藥類事犯 團束狀況

200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사범이 67%로서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밀매(12.5%), 소지(5.1%), 밀경(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유형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유형별 연도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투약)	소지	기타	합계
1998	0 (0.0)	79 (1.0)	841 (10.0)	866 (10.4)	5,777 (69.2)	569 (6.8)	218 (2.6)	8,350 (100)
1999	5 (0.0)	110 (1.0)	1,127 (10.7)	909 (8.7)	7,321 (69.0)	744 (7.1)	373 (3.5)	10,589 (100)
2000	8 (0.0)	190 (1.9)	1,178 (11.5)	983 (9.5)	6,858 (66.5)	575 (5.6)	512 (5.0)	10,304 (100)
2001	3 (0.0)	114 (1.1)	1,066 (10.6)	414 (4.1)	7,167 (70.9)	552 (5.5)	782 (7.8)	10,102 (100)
2002	4 (0.0)	137 (1.3)	1,329 (12.5)	498 (4.7)	7,251 (67.9)	549 (5.1)	905 (8.5)	10,673 (100)

자료 : <http://www.sppo.go.kr/drug>.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3) 職業別 團束現況

2002년도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38.8%), 유흥업종사자(6.2%), 상업(6.1%)순이며 기타 다양한 직업군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직업별 구성비 변동추이를 보면, 학생은 50.0%, 선원 및 운전사는 각 33.3%, 상업 17.3%, 회사원은 9.5%, 각 증가한 반면, 연예인은 75.0%, 유흥업종사자는 28.7%, 공업은 28.6%, 주부는 22.2%, 의료인은 18.2% 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 취약 직업군에 속하는 무직, 유흥업종사자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약류공급자들의 활동무대인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표 7> 직업별 단속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직업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8,350 (100)	10,589 (100)	10,304 (100)	10,102 (100)	10,673 (100)
무직	3,467 (41.5)	4,370 (41.3)	4,121 (40.0)	3,956 (39.2)	4,146 (38.8)
농업	593 (7.1)	570 (5.4)	540 (5.3)	363 (3.6)	416 (3.9)
상업	726 (8.7)	823 (7.8)	711 (6.9)	524 (5.2)	648 (6.1)
유흥업종사자	728 (8.7)	1,015 (9.6)	889 (8.6)	875 (8.7)	663 (6.2)
노동	298 (3.6)	367 (3.5)	423 (4.1)	448 (4.4)	434 (4.1)
회사원	268 (3.2)	381 (3.6)	367 (3.4)	423 (4.2)	488 (4.6)
공업	142 (1.7)	158 (1.5)	212 (2.1)	208 (2.1)	159 (1.5)
의료인	95 (1.1)	150 (1.4)	193 (1.9)	329 (3.3)	288 (2.7)
운전사	125 (1.5)	192 (1.8)	183 (1.8)	149 (1.5)	209 (2.0)
주부	55 (0.7)	87 (0.8)	122 (1.2)	87 (0.9)	78 (0.7)
연예인	38 (0.5)	48 (0.5)	81 (0.8)	41 (0.4)	10 (0.1)
선원	12 (0.1)	47 (0.4)	40 (0.4)	30 (0.3)	38 (0.4)
어업	21 (0.3)	27 (0.2)	30 (0.3)	13 (0.1)	31 (0.3)
학생	46 (0.5)	45 (0.4)	42 (0.4)	39 (0.4)	64 (0.6)
기타	1,736 (20.8)	2,309 (21.8)	2,350 (22.8)	2,617 (25.9)	3,001 (28.1)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4) 年 齡 別 團 束 現 況

200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생산·근로계층인 20~40대가 84.8%(전년도 85.6%)를 차지하여 청·장년층 마약류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5세 미만자의 마약류사범이 전무한 것은 마약류가격이 고가 등의 이유도 있지만 검찰의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8> 연령별 단속현황

(단위 : 명)

연령별 연도별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연령미상	합계
1998	77 (0.9)	1,936 (23.2)	3,270 (39.2)	1,667 (19.9)	516 (6.2)	509 (6.1)	375 (4.5)	8,350 (100)
1999	50 (0.5)	2,032 (19.2)	4,260 (40.2)	2,466 (23.3)	622 (5.9)	662 (6.2)	497 (4.7)	10,589 (100)
2000	30 (0.3)	1,658 (16.1)	4,155 (40.3)	2,697 (26.2)	595 (5.8)	708 (6.8)	461 (4.5)	10,304 (100)
2001	24 (0.2)	1,866 (18.5)	4,111 (40.7)	2,667 (26.4)	560 (5.5)	429 (4.2)	445 (4.4)	10,102 (100)
2002	79 (0.7)	1,903 (17.8)	4,350 (40.8)	2,796 (26.2)	577 (5.4)	527 (4.9)	441 (4.1)	10,673 (100)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5) 性別現況

전체사범 중 여성 점유율은 1999년도 22.0%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9> 마약류사범 성별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대 마		마 약		향 정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8	1,474 (91.8)	132 (3.2)	362 (40.6)	530 (59.4)	4,847 (82.8)	1,005 (17.2)	6,683 (80.0)	1,667 (20.0)
1999	1,959 (89.6)	228 (10.4)	395 (42.8)	528 (57.2)	5,909 (79.0)	1,570 (21.0)	8,263 (78.0)	2,326 (22.0)
2000	2,050 (89.8)	234 (10.2)	403 (42.2)	551 (57.8)	5,652 (80.0)	1,414 (20.0)	8,105 (78.7)	2,199 (21.3)
2001	1,350 (91.1)	132 (8.9)	331 (50.1)	330 (49.9)	6,416 (80.6)	1,543 (19.4)	8,097 (80.2)	2,005 (19.8)
2002	1,857 (94.5)	108 (5.5)	416 (52.7)	374 (47.3)	6,823 (86.2)	1,095 (13.8)	9,096 (85.2)	1,577 (14.8)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6) 地域別 團束現況

2002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49.2%), 영남(33.5%), 충청(7.7%), 호남(5.2%), 강원(4.0%), 제주(0.4%) 순으로 전체사범의 82.7%(전년도 84.5%)가 수도권 및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표 10> 지역별 단속현황

(단위 : 명)

지역별 \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8,350 (100)	10,589 (100)	10,304 (100)	10,102 (100)	10,673 (100)
서울	1,717 (20.6)	3,414 (32.2)	3,516 (34.1)	3,001 (29.7)	2,527 (23.7)
인천, 경기	1,899 (22.7)	2,227 (21.0)	1,993 (19.3)	2,615 (25.9)	2,717 (25.5)
부산	1,639 (19.6)	1,726 (16.3)	1,368 (13.3)	1,214 (12.0)	1,456 (13.6)
울산, 경남	627 (7.5)	912 (8.6)	910 (8.8)	894 (8.8)	875 (8.2)
대구, 경북	870 (10.4)	731 (7.0)	925 (9.0)	820 (8.1)	1,254 (11.7)
대전, 충남	507 (6.1)	467 (4.4)	448 (4.4)	534 (5.3)	625 (5.9)
강원	275 (3.3)	286 (2.7)	486 (4.7)	367 (3.6)	431 (4.0)
전북	128 (1.5)	145 (1.4)	169 (1.6)	245 (2.4)	221 (2.1)
광주, 전남	390 (4.7)	415 (3.9)	264 (2.6)	224 (2.2)	332 (3.1)
충북	257 (3.1)	221 (2.1)	201 (2.0)	152 (1.5)	190 (1.9)
제주	41 (0.5)	45 (0.4)	24 (0.2)	36 (0.4)	45 (0.4)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7) 外國產 麻藥類 密搬入 現況

2002년도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은 251.3kg(56건)으로 2001년도 162.4kg(51건) 대비 54.7% 증가 하였으며, 2000년에 처음 적발되었던 신종마약류 MDMA

는 2002년도에 39,932정(7건)이 밀반입되었다.

<표 11>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 명)

마약류	1998		1999		2000		2001		2002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메스암페타민(g)	16	16,269 (10,012)	17	14,559 (13,634)	36	46,497 (35,696)	35	151,937 (148,082)	30	69,085 (31,756)
코 카 인(g)	5	2,043 (2,043)	3	2,092 (2,037)	2	2,500 (1,850)	1	110 (110)	2	1,170 (1,170)
헤 로 인(g)	4	2,227 (1,923)	1	330 (330)	3	327 (327)	2	550 (550)	2	1,077 (1,077)
생 아 편(g)	3	1,442 (1,031)	1	1,058 (1,058)	7	3,364 (3,364)	2	4 (3)	0	0 (0)
대 마 초(g)	3	3,084 (1,084)	3	4,019 (2,219)	4	44,352 (44,352)	4	2,158 (2,158)	13	137,807 (137,798)
해 쉬 쉬(g)	1	700 (700)	3	2,420 (1,520)	1	440 (440)	3	4,220 (4,220)	2	2,260 (2,260)
엑 스 터 시(정)					3	639 (564)	3	1,435 (995)	7	39,932 (38,734)
엘 에 스 디(정)					1	190 (178)	0	0 (0)	0	0 (0)
야 바(정)	1	200 (148)	0	0 (0)	2	8,010 (3,990)	1	2,018 (2,018)	0	0 (0)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8) 外國人 癮藥類事犯 現況

국내 경기현상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여 왔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2000년도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급감하였으나 2001년도에 들어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에 따른 출입국 심사완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996년도 이후 대마(대마초, 해쉬쉬)사범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9년77부터는 대마와 더불어 메스암페타민, MDMA 등 향정사범이 급증하였다.⁷⁹⁾

<표12>외국인마약류사범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마약류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28 (100)	60 (100)	23 (100)	70 (100)	88 (100)
대 마	14 (50.0)	28 (46.7)	7 (30.4)	30 (42.9)	27 (30.7)
마 약	14 (50.0)	3 (5.0)	3 (13.1)	12 (17.1)	21 (23.9)
향 정	0	29 (48.3)	13 (56.5)	28 (40.0)	40 (45.5)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5. 麻藥類事犯 管理實態

검찰은 마약류사범이 단속되면 1998년 이전까지는 일체의 외부인 접견을 막아 마약류범죄조직의 연루자를 검거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향정사범으로 구분해 놓았던 마약류사범들에게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구치소 면회, 차입품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어, 마약류중독자들은 구치소나 교도소내에서까지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마약류를 구입, 복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행형상 및 마약류사범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80)

국립정신병원과 국립부곡정신병원부설 마약류중독진료소 등 전국에 23개소 정도의 지정병원은 무료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인 이목과 피해망상증에 걸려있는 마약중독자들이 자기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이들을 방치함으로써 다시 마약류를 복용하여 재검거되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마약사범 사후관리가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

79)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95~110쪽.

80) 교도소 수감자가 마약을 투여하여 교도관을 폭행하고 구치소장과 교도소장이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1998년 12월 부산주례구치소와 김해교도소에서 발생하였다.

第 4 章 麻藥類事犯에 대한 各國의 對策

第 1 節 各國의 個別的 對策

최근의 국제적인 마약류거래는 동구권과 중국 등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의 4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마피아, 일본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국제범죄인 마약 거래를 일삼고 있다. 이들 국제범죄조직들은 연간 3조달러 규모의 지하경제를 장악함으로써 국제경제 흐름을 왜곡시키는 한편 엄청난 불법자금을 동원 자국 정치권을 비호세력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더욱 마약류퇴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는 마약류밀제조, 수출국에서 1989년부터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공급조직이 거의 근절됨에 따라 1992년부터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변에는 마약·위폐·총기밀매 등 국제범죄와 연계된 북한, 마약·총기밀매를 하고있는 러시아마피아, 마약과 돈세탁을 주도하는 미국마피아, 마약·불법입국·밀수·위폐의 범죄국인 중국, 마약·총기 밀매밀수·돈세탁을 하는 홍콩, 헤로인을 공급하는 미얀마, 도박·인신매매·마약·총기밀매를 하는 일본 등으로 둘러 싸여있어 마약류퇴치가 어렵게 되어있다. 마약류밀수사범에 대한 추적은 그 범죄적 특색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아래에서는 각국의 밀수사범대책과 수사동향을 알아본다.

1. 美國

미국은 마약류 대처를 위해 방대한 수사기관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미국의 마약류 수사기관으로는 법무부산하의 마약청(D.E.A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이민귀화국(I.N.S :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 재무부산하의 국제청

(I.R.S : Interl Revenue Service), 연방관세청(U.S Customs Service), 운수부 산하의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및 각 주정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정부(State Police), 지방경찰(Local Police) 등이 있으며 이중 중추적 기능은 마약청이 한다.

2. 日本

일본은 마약류 수사기관으로 경찰청, 검찰청, 해상보안청 및 후생성(마약취체관)이 있으며 세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중심적인 수사기관은 경찰청이다. 경찰청생활안전국 약품대책과는 일본 마약류단속의 핵심기관이며 마약류사범 단속에 관한 기획, 조사, 지도, 조정 및 관계부처와 연결, 국제정보교환 등을 담당한다. 그외에 세관은 밀수출입에 관한 업무와 아울러 마약류에 대한 감시업무도 병행 수행하나 사범권이 없어 검거시 수사기관에 인계한다.

후생성은 전국에 마약취체관사무소를 설치하고 마약취체관을 통해 합법마약류 규제를 주로 한다. 해상보안청도 해상범죄수사권이 있으므로 마약류사범을 단속한다. 해상을 통하여 해외에서 밀수입하는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무성 산하 검찰관은 공소관으로서 임무가 주된 것으로 마약류사범 수사는 보충적인 것에 그친다.⁸¹⁾

3. 中國과 東南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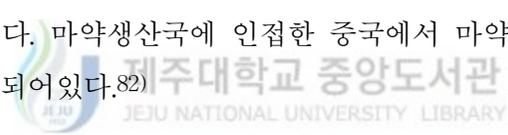
중국은 1997년 “마약과의 전쟁의 해”로 선포한 후 1997년 3월 헌법개정을 통해 마약류밀조·판매·운송행위에 대한 형량을 최고 사형으로 명시하여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편 1kg, 헤로인 50g 이상 취급하거나 국내의 마약밀매·밀조단의 핵심요원은 15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마약류원료 밀거래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강도 높게 대처한다. 태국은

81) 경찰청, 「마약류사범수사실무」, 2001, 118쪽.

1997년 1월 “마약과의 전쟁선포”로 암페타민 밀매 및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중이며 미얀마, 라오스와의 협력하고 있으며, 130만명의 마약류중독자 중 80%가 암페타민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메탐페타민, 텍사페타민을 판매목적으로 20g 이상 소지하면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최하 징역 20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한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UN의 지원으로 마약류재배지에 대해 지역개발 및 대체작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 4월 마약류사범 및 거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미얀마는 1988년 UN협약가입을 선언한 후 1999년 “대마약전쟁선포”를 하고 1996년 1월 “쿤사”항복 이후 아편소각을 공개리에 실시하고 있으나 수익성 때문에 아편재배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는 의약용이란 명분으로 아편재배를 면허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파키스탄은 1997년 4월 마약류사범의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을 만들고, 1997년 9월에는 “대마약·밀수 지역조정위원회”까지 만드는 강력한 시책을 펴 노출시킨다. 마약생산국에 인접한 중국에서 마약은 경찰과 공산당의 집중적인 척결대상이 되어있다.⁸²⁾



4. 獨逸과 中南美

독일의 마약류 총 사용자수는 1998년에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20,943명이며, 이중 암페타민류 및 코카인 사용자가 각각 20.2%와 10.6%씩 증가하였고,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층이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마약남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1,712명에서 1997년 1,501명으로 다소 감소(12.3%, 211명)하였으나 1998년에는 1,712명으로 다시 증가, 이중 메사돈 관련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240명이었다. 페루는 1992년 9월 마약밀매와 관련된 “빛나는 길”의 지도자 구즈만(Abimael Guzman)이 체포되었고, 코카인 생산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해외투자유치와 마약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볼리비아는 대규모 군병력까지 동원하고 미국과 합동으로 강력한 대응방식으로 마약단속

82) <http://web12.cri.com.cn/korea>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4년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1989년 “마약과의 전쟁선포” 1993년 미국의 지원으로 “메데인 카르텔”에 대해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두목인 “에스코바르”를 사살하였으며, 1995년 칼리카르텔의 보스 “로드리게스” 형제를 체포하였다. 브라질은 상파울로, 리마 등에서 약 7만여명 정도가 마약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5,000여개의 마약밀매루트를 운영하고, 80여개의 마약도매상이 국제마약조직과 연계되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⁸³⁾ 경제침체 및 국내정치 불안과 정부내의 권력투쟁으로 마약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⁸⁴⁾ 독일과 브라질 등의 마약수사기관도 원칙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맡는다.

第 2 節 國際麻藥類事犯 共助搜查體制

국제적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범죄조직은 국경과 법제도를 뛰어 넘어 그 활동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즉, 마약 사범문제는 어느 한 특정국가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조직폭력배와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거래개입과 국제마약조직과의 연계가 빈번하다. 또한 마약류 불법사용 지역과 계층도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고도의 경계를 요한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은 2000년 5월 현재 전세계 150여개국에 가입한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of 1988)”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8년도에 가입하였다. 이같은 국제적 범죄에 대응하려는 조직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범죄조직의 자금줄봉쇄를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등이 유보되어 국제범죄단속의 사각화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에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

83)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 정보 자료집」, 101쪽.

84) 브라질 정부는 1998년말까지 총 5억불을 투자, 국경지대의 공중감시 등을 통한 마약밀매 차단 및 경찰력 증강을 통한 마약밀매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1996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나 여·야 합의는 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고 빠르면 금년중 입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인터폴 등을 통해 세계각국과 마약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나 검찰위주의 수사기관 통솔 등으로 부처간 이견 대립 등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상존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마약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나 마약수사의 특수성 등으로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8년 4월 그동안 전세계 국제범죄조직의 자금보관 및 자금세탁기지로 이용되던 스위스가 강력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등 각국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어 국제범죄조직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약류밀수 검거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외국세관 및 국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은 특수조사과 내에 국제정보실을 설치하고 태국·중국 등 마약 관련 주요 7개국과 정보채널을 구축 운영하고, 주요 마약관련 국제기구인 아·태지역 RILO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등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마약관련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수사전문가를 초빙하여 마약 단속세미나를 개최한다.⁸⁵⁾

마약류사범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관련하여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북한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적 마약사범조직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과거에는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해 대체로 묵인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1998년 3월 러시아 내무부가 북한인 벌목공의 아편밀매사건을 유례없이 언론에 발표하는가 하면 중국도 마약류 밀매 등 국제범죄에 대해 초강경책을 쓴다.

1998년 2월 26일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인터폴 본부 마약과에 벨기에 경찰청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제약 총회사가 북한 보건부로부터 발부받은 추천장을 첨부해 벨기에의 한 화학회사에서 필로폰의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에페드린 20t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북한의 주문에 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문이 도착하였다. 에페드린은 통상 진통제의 제조에 쓰이나, 합성마약인 필로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

85) http://www.customs.go.kr/hp/PN_S001_01.jsp

때문에 UN마약통제기구에서는 에페드린의 제조와 판매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인구나 산업규모로 볼 때, 북한은 연간 2t의 에페드린을 수입하면 북한에서 연간 소요되는 진통제 1년치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연간 필요량의 10배에 이르는 양을 주문했으니 벨기에 경찰청은 인터폴에 의견을 물어온 것이다. 인터폴 마약과 직원들은 회의를 하여 주문량이 너무 많으므로 관련회사의 수출을 중단 요청하여 북한이 필로폰의 원료인 에페드린의 수입을 막았던 사실이 있다.⁸⁶⁾ 이러한 사안으로 볼때 북한이 새로운 루트와 시장개척을 위해 국내시장을 공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第 3 節 犯罪收益 剝奪

1. 概 要

단속정책도 다양화되어 단순히 마약류 공급사범과 사용사범에 대한 검거 뿐만 아니라 마약류에 대한 자금의 몰수 등에 통하여 범죄조직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범죄수익의 박탈과 몰수는 약물거래와 여러 유형의 조직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⁸⁷⁾ 우리나라의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을 비롯하여 각국에서는 모두 마약류 범죄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범죄조직이 범죄로 인한 수익을 돈세탁하여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범죄행위에 다시 사용함으로써 범죄조직이 양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결국 국가의 기초를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집단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은 그 조직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과거의 수익을 박탈할 때 범죄의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연합 협약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조직은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때문에 마약조직을 적발

86) 이종화, “필로폰 원료 북한행 막아라”, 「신동아」, 2002, 6, 409쪽.

87) Tullis, L, et al : Handbook of Research on the Illicit Drug Trad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1991, 133쪽.

하기는 어렵다. 고도로 지능적인 마약거래의 “상선”들을 기본권조항과 적법절차를 따르면서 적발하기도 실로 어렵다. 마약조직의 세력은 정부군과 전쟁을 벌일 정도이며, 따라서 목숨을 걸고 마약조직 추적을 자원할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남미국가들에서는 국가조직 내에 내통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 불법마약거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마약조직의 보복테러가 계속되는 한편 통치권자가 마약거래를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마약류의 공급 차단 정책은 난항에 빠지게 된다. 또한 사람(공급자, 수요자) 검거 전략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선 검거, 범행입증, 중형선고, 영구격리에 따른 현실적 부담과 한계성이 있다. 마약류 몰수 전략은 적발과 보관이 어렵고, 대체마약이 산재하며, 야생마약류(대마 등)의 서식처가 산재하는 현실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력한 수단으로 대두되는 것이 수익박탈정책이다. 수익박탈 정책은 일단 적발만 하면 간단한 몰수절차로 막강한 마약조직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수익박탈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⁸⁸⁾

수익박탈 전략은 마약거래수익 및 증식재산의 무차별 몰수, 몰수를 통한 일확천금의 환상 제거, 자금줄 차단을 통한 조직기반 궤멸, 박탈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법제 정비, 돈세탁(Money Laundering) 금지 및 위반자 처벌, 돈세탁 행위 적발을 위한 전국적 감시체제 구축, 돈세탁 행위 적발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불법재산 몰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마련, 몰수전략의 공동추진 및 국제협력 확대, 국가기관간 및 인접국가간 협력, 지역국가간 및 세계적 차원의 협력 등이다.⁸⁹⁾

수익박탈전략은 흔히 1988년 비엔나협약 또는 마약신협약으로 불리는 1988년 “유엔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1988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king in Narcotic Drugs and Psycho7tropic Substances)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마약자금의 세탁금지 및 위반자 처벌, 마약거래수익의 몰수에 필요한 법제 정비, 마약자금의 효율적 추적을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1988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의해 바젤에서 채택된 “금융통제 및 감독실무에 관한 원칙선언”(The Statement of Principles of

88) 조병인, <http://home.freechal.com/silkfree/>의 자료실

89) 조병인, <http://home.freechal.com/silkfree/>의 자료실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s)에서도 은행고객 신원 확인 강화(가·차명거래 불허), 실정법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책임과 의무 이행,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마련 등을 권고하고 있다. 1990년 FATF돈세탁 보고서에서도 돈세탁의 범죄화 및 위반행위 단속, 금융비밀의 범위축소(예금비밀보호주의 포기), 은행고객의 신원 확인, 수상한 금융거래 신고 유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국가간 협력 확대, 개발도상국의 발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유럽이사회에서는 “범죄수익의 세탁·수색·압수 및 몰수에 관한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Money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s)을 채택하여 마약범죄, 무기불법거래, 테러리즘, 아동매매 등의 중대범죄로 획득한 불법수익의 수사, 검색, 압류, 몰수를 위한 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을 권고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불법거래로 얻은 수익의 은닉을 불가능하게 하고 수익을 박탈하는 조치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⁹⁰⁾



2. 國內 關聯法規의 檢討

우리나라는 마약류를 생산·유통하는 공급자 및 사용·알선자까지 처벌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형법은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 내지 제206조)에서 “아편, 몰핀,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마약류와 관련된 각종 특별형법에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사범을 처벌하는 특별형법으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이 있었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0년 제정되면서 모두 폐지되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사범의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즉, 동법 제11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중 마약과 관련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마약류를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을 수입·수출·소지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 마약류

90)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계논문, 73~76쪽.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국제적 협력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약물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의 특례 등을 정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법률 제5011호로 제정되어 1995년 12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同특례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부터 생긴 범죄수익과 불법재산의 은닉·도피를 막고 철저한 추적·환수를 위해 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등을 처벌하는 규정(동법 제7조, 제8조)을 두고 있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으며(동법 제5조) 나아가 불법재산의 몰수를 위한 상세한 특례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同특례법상의 몰수규정도 앞에서 살펴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의 “확대”몰수와 마찬가지로 몰수대상재산의 확대(동법 제2조 3항~5항), 불법재산 입증책임의 완화(“상당한 蓋然性”으로 족함, 동법 제17조), 제3자 보호절차의 마련(동법 제23조~제32조), 몰수·추정보전제도의 마련(동법 제33조·제59조)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⁹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확대”몰수의 가장 큰 특징은 몰수대상 재산의 확대, 불법재산에 대한 증명요구 완화 그리고 불법재산의 도피·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몰수·추징의 보전절차를 둔 것 등에 있다. 이 중 몰수대상의 확대, 즉 범죄에서 직접 유래한 불법수익과 그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예컨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 등)을 불법재산으로 간주하고 이 불법재산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것(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 2~4호 및 3조 1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 그리고 행위자에 의한 불법재산의 도피·은닉을 방지하고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몰수·추징의 보전절차를 둔 것 등은 범죄행위에서 발생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범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격, 범인

91) 서보학,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범치국가적 한계”, 「안암법학」 제5호, 안암법학회, 1997, 93쪽.

의 재산운용상황, 불법수익금액 및 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인정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의 특례법들이 이와 같은 불법재산의 추정규정을 둔 이유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이 불법재산을 몰수함에 있어서는 몰수대상인 불법재산이 불법수익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입법적으로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어 혐의가 가는 재산의 몰수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례법상의 이 추정규정은 독일이 지난 1992년 7월 “組織犯罪對策法”(Das Gesetz zur Bekämpfung des illegalen Rauschgifthandels und anderer Erscheinungsformen der Organisierten Kriminälität)을 통해 형법전에 새로이 도입한 擴大剝奪(erweiterter Verfall)의 불법재산 추정규정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형법상의 擴大剝奪(동법 제73조d)은 조직범죄집단의 유지 및 범죄재창출의 기반을 제공하는 범죄수익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범죄집단의 세력약화를 유도하고 범행에의 욕구를 감소시켜 국가의 對組織犯罪鬭爭에 일조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된 제도로서 무엇보다도 불법재산의 몰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완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즉 독일형법상의 擴大剝奪制度에 따르면 법원은 “어떤 위법행위가 저질러진 경우에 저축된 법률이 확대박탈을 특별히 예정하고 있고⁹²⁾ 정범 또는 공범의 재산이 위법행위를 위해 또는 위법행위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正當한 事情⁹³⁾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몰수대상이

92) 독일법상 확대박탈을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 인신매매, 장물죄, 마약범죄 등과 같이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을 규율하는 법률조항들이다.

93) 독일연방정부의 초안이유서는 “행위자 재산이 위법행위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적인(die ganz überwiegend wahrscheinlichste)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합법적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고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행위자의 行狀, 前歷으로 볼 때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무리없이 자연스러운 판단이라고 여겨지는 정도”의 사정을 정당한 사정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우리 특례법상의 불법재산 추정규정이 범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격,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불법수익금액 및 재산취득시기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蓋然性”이 있는 경우에 몰수를 정당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되는 재산이 현재 재판의 대상이 된 위법행위와 구체적인 관련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⁹⁴⁾ 또한 몰수재산의 불법적인 출처를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도 없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법행위가 범망에 걸려들기만 하면 정범 또는 공범의 재산이 과거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범법행위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출처가 불법한 것이라는 냄새가 나고 제반사정이 그 가정을 정당화시킨다면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⁹⁵⁾ 이러한 추정규정이 범죄수익의 몰수를 위해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형사사법기관의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임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때문에 독일문헌에서 擴大剝奪制度는 비록 법치국가적으로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상 필요불가결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⁹⁶⁾

최근 청소년계층을 중심으로 남용되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본드·부탄가스 등의 소위 유해환각물질이 있으며 환각물질의 섭취·흡입행위는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해환각물질 흡입사범은 마약류 사범에는 포함하지 않는다.⁹⁷⁾



94) 독일형법 제73조 1항의 통상적인 몰수는 몰수의 대상(etwas)과 현재 심판의 대상이된 위법행위와의 구체적인 관련성(대응관계)을 몰수의 필요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95) 따라서 예컨대 마약 소지나 밀매, 화폐 위조와 행사, 인신매매, 장물죄 등으로 유죄가 된 정범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기타 변형재산 등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96) 서보학, 전계논문, 105~108쪽.

97) 경찰청, 「마약류사범 수사실무」, 2001, 72쪽.

第 5 章 濟州國際自由都市化와 癩藥事犯對處 方案의 摸索

第 1 節 濟州國際自由都市化의 意味와 內容

1. 國際自由都市의 意味

자유도시(Freiestadt)라는 개념은 원래 역사적인 것이다. 중세 이후 지방의 영주, 즉 지방주권에 소속되지 않고 국왕·황제 등 중앙 주권에 직속되어 있던 독일의 도시들을 일컫는 명칭인 것이다. 이들 자유도시에는 두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대부분 13~14세기경 카톨릭인 司敎의 지배에서 이탈한 독일의 도시들이다. 쾰른·마인츠·윌무스·슈바이에르·슈트라스부르크·바젤 등이 여기에 속하며, 남부의 레겐스부르크와 동부의 마그데부르크 등은 약간 뒤늦게 자유도시화되었다. 거의 일체의 公的 권력을 가지며, 帝國의 도시와는 달리 황제를 위한 出征 및 歲貢 등의 의무가 면제되어 후에는 자유제국도시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1815년 독일연방에 가입한 함부르크·브레멘·뤼베크·프랑크푸르트 등 네 도시를 말한다.⁹⁸⁾

오늘날 국제자유都市는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여러 종류의 경제적 유인책의 제공을 통하여 광범위한 경제활동이 장려되며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도시라고 정의된다. 국제자유都市에는 수출자유지역, 무역중계지역, 국제투자자유지역 등과 같이 국제자유都市의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는 협의의 국제자유都市와 중계무역, 창고 및 보관, 국제금융활동, 국제비즈니스, 관광 및 쇼핑 등의 다양한 경제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광의의 국제자유都市가 있는데, 제주처럼 제반 경제활동에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경우는 후자라 할 것이다.

98) 이 두 유형의 자유도시와는 달리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로이센에서 분리된 단치히는 1920~1939년 국제연맹의 관리하에서 자유도시가 되었다. 한편, 도시의 자치권 획득면에서 보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의 중세 도시에서도 자유도시와 같은 성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자유도시라 할 때는 보통 독일의 경우를 지칭한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목표는 제주가 동북아시아의 인구 1천만 이상의 주요 도시인 서울, 동경, 상해와 매우 가까운 중심적 위치에 입지하고 세계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투자가들을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21세기 경쟁력인 청정환경과 독특한 섬문화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휴양지 및 연구 개발지로 만들어 나아가자는 데에 있다.

제주도는 지리·경제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경, 상해, 동경, 오사카, 서울 등 아시아 5대 도시와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연결될 수 있으며 동북아 물류벨트(logistics belt: 러시아-일본-대만-홍콩-중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들의 물류비용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국내적으로 물류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인접 국가들간의 물류시설의 공동이용과 공동투자와 같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해운과 항공을 통해 동북아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제주도는 국제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의 물류비용의 약 60%가 운송비이고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고려하면 동북아의 주요상품 생산지로부터 해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한 제주도는 새로운 동북아 물류기지로써 부각될 수 있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에 따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확대와 체류지역 확대 및 외국인 학교 설립 등으로 인한 마약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치안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특히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체계 즉, 검찰 경찰 관세청 등에서의 마약수사와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기 위하여는 관련 실정법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내용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2. 國際自由都市의 主要內容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2001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 제

6643호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로, 과거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형식의 법률이다. 이 법률은 본문 13장,⁹⁹⁾ 112조, 부칙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 5장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外國人의 入國 (第14條)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제 1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제 2항).

2) 滯留地域擴大許可 (第15條)

법무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할 수 있다(제 1항).

3) 外國語 서비스 提供 (第20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 안에서

99) 각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등, 제4장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및 해외협력, 제5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의 촉진, 제6장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제7장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제8장 산업발전을 위한 특례, 제9장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 제10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1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12장 보칙, 제13장 별칙 그리고 부칙이다.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外國人學校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에 불구하고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특별 지원할 수 있다(법제21조 내지 제25조).

5) 租稅減免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주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법 제41조·제44조 및 제65조).

第 2 節 麻藥 搜查의 實題事例와 對處方案

1. 濟州에서의 實題事例와 經驗

경찰청에 마약과가 신설되기 전에 제주지검 강력검사실에서 마약사범을 수사한 경험에 의하면 마약사범 검거에서 첫 번째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것은 언제 어떤

한 방법으로 첩보를 입수하느냐이다.¹⁰⁰⁾ 그 다음에는 마약사범을 언제 검거하느냐이다. 마약을 투약하고 나서 소변과 머리카락 등을 통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소변의 경우는 보통 3~7일정도 시간이 지나면 간이지역 검사를 하여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며 머리카락에서는 약 6개월까지 투약 효과가 남는다. 그러나,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변검사에서 예상한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일단 돌려보낸 후 머리카락에서의 검사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따라서 투약자를 검거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른다. 일단 집에 돌아간 투약자는 지하로 숨어 들게 마련이고 그 상선을 검거하는 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로부터, 신속하게 소변검사나 체모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수사기관의 확신이 가는 사범을 체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 사례들은 마약사범의 수사에 있어서 위의 두 요건이 중요하다는 실재를 보여준다.

첫 번째 사례는 제주도의 한 여행사의 영업과장으로 종사하던 투약자 A이다. A는 당시 부산의료원 응급실 부근에서 금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4그램을 구입한 후 근처 여관에서 1회 투약하였다. 그 시경부터 4-5명의 사람들이 방문 탐사이로 들어와서 자신이 환각상태에 있는 것을 8미리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자신을 계속하여 미행하였다고 한다. A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투명인간이 되어 옆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지켜보면서 감시를 하므로 겁이 나서 제주에 내려오려고 김해공항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 B반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있는 히로뽕을 다 버리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히로뽕을 화장실에 다 버렸다고 한다. B반장이라는 사람은 투약행위를 모두 용서하여 준다고 하므로 A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한 후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내려왔다. 제주에 내려온 후에도 B반장 일행이 계속하여 추적하므로 한라산으로 올라가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B반장 일행은 카메라를 들고 거기까지 따라와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괴롭히자 자살에 성공치 못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내려와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하였다고 한다. 마약 투약으로 환각상태에 빠진 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이다. 투약자 A는 당시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철사를 이용하여 양 팔뚝에 뽕값 100만원을 꼭 받을 것과 연락처인 휴대폰 번호를 새겨 놓았었다(사진 참조).

100) 연구자는 과거 제주지검 강력검사실에서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다.



두 번째 사례는 C라는 여성이다.

제주에 있는 모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C는 이 사건 이전에 일본인 관광객을 만나서 투숙을 하였다. 당시 일본인이 마약을 하였다는 첩보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 일본인에 대하여 출입국시 통보협조중 일본인 투약자가 제주에 입도하였다는 통보를 받고는 투숙지를 추적한 연구자는 서귀포시내 한 호텔에 유흥업소 아가씨와 투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텔 방을 수색하여, 침대 옆 전등 받침대에서 하얀 메모지와 비닐에 싸인 필로폰 0.3그램과 1회용 주사기 등을 압수하였다. 일본인 투숙객은 같이 투숙한 C

에게는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복용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의 일본인은 제주에 입도하기 전 일본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친 후 제주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마약을 운반 투약하였다. 요즘에도 일본인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와 유흥업소 여 종업원과 투숙하면서 같이 투약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일본인 관광객의 인적사항을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시 수사협조요청 중에 있는 예가 더러 있다.

2. 麻藥類事犯 對處方案

이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됨에 따라 출입국이 자유로워지면 이와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나 제주지역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심각한 문제도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내용에 따라 제주도에는 국제적으로는 마약류 밀매사범의 출입이 용이해지고, 국내적으로는 마약류범죄의 빈발이 우려된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이를 악용한 밀수행위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외국인과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수적 효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로 퇴폐적 향락추구 계층의 증가, 마약류 소비의 급증, 사회저변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일확천금을 노린 마약류 밀매업자나 국제화·조직화된 마약류 밀수조직들이 우리나라에 마약류 공급을 늘리거나, 우리나라를 마약류 밀수의 중계지로 악용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국내적 마약류사범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1) 麻藥類 密輸防止를 위한 對策

마약류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관세청 차원의 대책이며,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1) 우범여객기에 대한 불시 全數검사 실시
- (2) 제주공항 입국 여객기에 대한 수시 연속 밀수감시

- (3) 마약밀수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대폭 상향 조정
- (4) 제주 지방관세청에 마약전담과 신설 및 마약 전담요원 대폭 증원
- (5) 해외 주재 관세관 및 마약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6) 관세청 직원의 마약전문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마약 탐지견 활용의 효율화¹⁰¹⁾
- (7) 각종 밀수 감시 장비의 보강, 특히 휴대용 이온스캐너, 컨테이너 화물검색용 X-Ray투시기, 컨테이너 화물 및 항공팔레트 화물검색기 등의 도입 또는 확대

2) 國際共助의 強化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하여는 마약류밀매에 관한 국제적 공조가 특별히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 마약수사청(DEA)과도 마약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수사공조가 가능하도록 미국·일본·중국·태국·필리핀 등과 “24시간 핫라인” 개설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마약류소비가 여러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국내공급 마약류가 중국 등 외국에서 밀수되고 그 수법이 대형화,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국제간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는 더욱 절실해진다. 특히, 중국 관광객의 숫자나, 중국과의 교역량을 감안할 때, 한·중 마약대책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국동포들을 이용하여 마약류 밀제조·밀거래사범에 대한 양국정부간의 공동대처로, 검찰에서는 2000년 6월부터 중국정부와 공동 대처하는 방안으로 공급처가 중국으로 드러난 마약류사건은 발생할 때마다 중국 공안부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는 것처럼 세계각국과도 다같이 공동으로 마약류사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모든 마약류사범 단속기관도 국제적인 유기체제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101) 최근들어 MDMA(엑스터시)와 같은 신종 마약이 공항만을 출입하는 여행자를 통해 반입되어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항만에 마약탐지견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공항만을 통한 마약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 관세청 특수조사과, 2001-09-04. http://www.customs.go.kr/hp/PN_S001_01.jsp

3) 麻藥類搜查體系上的 改善

이 부분은 주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다. 마약류 수사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고, 사용사실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과거에는 공소사실의 특징에 엄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공소사실을 일정 범위내로 특정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상당한 애로가 생기게 되었다. 모발검사 등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소사실의 특징을 완화하는 한편 정밀기계의 개발 등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¹⁰²⁾

(1) 主要關心對象

제주 국제공항화로 인한 마약류사범 증가우려에 대하여는 불법체류외국인, 국내 조직폭력배, 미성년자의 마약류 사용 등에 대한 각별한 감시를 요한다.

① 不法滯留 外國人の 麻藥類犯罪 介入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본국 마약조직과 연계,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마약류범죄 개입을 초기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과 우리나라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폭넓은 활동을 벌일 경우 국내 마약류 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② 組織暴力의 麻藥類去來 介入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은 전통적으로 마약류거래를 자금원으로 삼지않는 관행을 지녀왔는데, 이는 수십년간에 걸쳐 검찰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의 철저하고도 강력한 억제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은 조직의 유지·운영상

102)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계논문, 341~342쪽.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최대한도의 이익확보가 조직의 목적인 관계로 최근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이 소량의 마약밀거래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대형조직을 갖추어 마약류시장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마약조직이 침투하거나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할 경우 그 위험성은 극히 심각하여 통상적인 치안력으로는 정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마약류 범죄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며, 조직범죄화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조직범죄집단의 개입을 차단하는 한편 마약류범죄자들이 조직범죄집단화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마약거래 수익 및 증식재산의 무차별 몰수, 몰수를 통한 일확천금의 환상제거, 자금줄 차단을 통한 조직기반 궤멸, 돈세탁 행위 적발을 위한 전국적 감시체제 구축, 돈세탁 행위 적발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불법재산 몰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마련, 몰수전략의 공동추진 및 국제협력 확대, 국가기관간 및 인접국가간 협력, 지역국가간 및 세계적 차원의 협력 등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마약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의 추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경우 마약류 공급범죄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³⁾

③ 未成年者の 麻薬類 使用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마약류범죄 현황은 외국에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인바, 미성년자의 마약류사범은 1994년도 134명에서 1999년도 50명, 2000년도에 3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청소년 상대 밀거래사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개정 등 검찰의 청소년 최우선 보호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물질주의 및 향락·퇴폐풍조 심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상실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가출과 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또한 이들을 이용한 율락이나 유흥업소 경영 등 불법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마약류 사용 및 판매중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청소년들에 의한 마약류범죄가 계속 확산될 경우, 이는 곧 그 사회나 국가 전체가 마약류로 병들어 있다는 심각한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3)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계논문, 341~342쪽.

(2) 情報電算化와 共有體系確立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등 핵심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마약사범 관련 정보를 경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고루 통보하여 마약사범을 효과적으로 검거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06년 순수식품 및 약물법(Pure Food and Drug Act) 제정 이후 해리슨마약법(Harrison Narcotics Act, 1914), 마리화나세법(Marijuana Tax Act, 1937) 등을 통하여 마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입각한 정책추진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약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무부, 보건부 및 법무부의 산하기관들이 분담하는 형태에 이르렀는데,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 업무실에서 국외마약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서는 증거물 감정 및 정책개발을, 법무부 산하 약물수사청과 연방수사국에서는 마약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일선기관간의 업무분담과 함께 백악관 직속의 국가약물정책 통제실(Office of National Drug Policy Control : ONDPC)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의 약물정책을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마약류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⁰⁴⁾

(3) 痲藥事犯 專門搜查教育 및 鑑定制度

검찰수사관은 물론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마약제 조과정, 밀반입과정, 투약과정 등을 세밀하게 교육시켜 마약류 중독자나 남용자들을 신속히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제도의 개선책으로 모발, 소변, 혈액, 손톱, 발톱, 땀, 타액 등의 감정시약개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감식기관을 활성화하여 전국의 마약사범용의자로부터 채취한 모발, 소변, 혈액, 손톱, 발톱, 땀, 타액 등에서 마약성분을 찾아내는 각종 시약을 개발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시약을 조속히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연구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증거물 채취단계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04) 이정수 외 3인, “메스암페타민 사범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233~237쪽.

마약류는 그 성분의 특성상 소변 및 모발감정을 통하여 마약류 증거물 채취가 가능하다. 원래 마약류 증거물은 소변·모발 외에도 혈액, 손톱, 발톱, 땀, 타액 등에서도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거물들은 감정의 정확성 및 보관이 어려워 채취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혈액이나 손톱, 발톱 등은 개인의 신체 일부로 간주되어 채취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마약류 증거물의 채취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3>은 마약류 증거물 채취요령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소변감정과 모발감정은 현재 일선의 수사기관에서 빈번히 시행하고 있는 증거물 채취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한다.

<표 13> 마약류 증거물 채취요령

감정 대상	감정요령 및 주의사항
소변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폰 투약시 20분후로부터 뇨로 배설 ○ 복용량의 25%가 24시간 이내, 75~90%가 48시간 내 배설 상습투약시 7일정도 경과후 검출 ○ 초심자는(1~3회투약)는 2~3일 이내 소변채취, 중독자는 5~7일 이내 소변 채취 *필로폰·헤로인·코카인은 채취기간 등이 유사, 대마의 경우 10일 이내 ○ 시 약 : 소변검사용 “아큐사인”사용, 95%가 정확 ○ 소변채취시 약 20ml 채취전 맥주·콜라·커피등 이노작용이 있는 음료수 복용금지
모발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30수 이상(20mg 이상) 채취하여야만 감정가능 ○ 모발은 손으로 뽑거나 가위 등으로 절단하여 채취 ○ 가위로 절단시 가능한 두피에 가깝게 절단, 채취 ○ 모발의 길이에 따라 수개월전 복용 마약류 투약여부까지 확인 가능하며 취급이 용이 ○ 모발 채취시 머리의 앞·뒷면이 아닌 머리 꼭대기의 정수리 부근 머리 채취가 바람직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손톱·발톱·땀·타액 등이 있으나 감정의 정확성 및 보관이 어려워 주로 소변·모발감정이 사용됨

자료: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응」, 1998.

(4) 警察의 麻藥事犯 團束專擔機構 擴張

경찰은 마약단속기관중 어느 조직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직의 방대함에 비해서 마약사범 대처기능은 미약하다. 경찰청 산하 각 지방경찰청에 마약계 신설 및 각 경찰서 마약전담반의 신설 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각 분소 마약계 신설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화가 되고 변화될 환경에 따라 경찰에 의한 마약감시체계의 중요성은 크다.

마약류 사범의 수사경험에서 보면 원격거래(예컨대 제조는 서울에서 거래는 부산에서)의 경향이 두드러져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단시간내에 수사관을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 통신장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마약류 거래는 결코 운 좋은 수사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으며 수사관의 끈질긴 탐문과 조직적인 수사활동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으며 범인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실마리인 마약류 거래 현장에서 용의자가 제공하는 마약류와 교환할 거액의 수사 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단순 투약자 신고 등을 기초로 수사하는 경우 결국 미미한 상선(밀거래자)의 검거로 종결되는 것은 수사 경험상 체험한 사실이다. 많은 물량의 압수로부터 개시된 수사가 거물급 범인을 검거하기 용이하나 거물들은 많은 물량을 나누지 않고 거래하기 때문에 그들을 유혹하는 데는 많은 수사자금이 필요하다.¹⁰⁵⁾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화 이전부터 내외국인 관광객 등에 따른 치안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제 국제자유도시화의 변화에 따라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증원과 아울러 경찰서를 신설하여 경찰의 마약류감시 및 수사기능을 강화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사단계의 지원 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¹⁰⁶⁾

4) 國家麻藥退治戰略 綜合推進對策

이 부분은 검·경과 관세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합동하여 수행할 정책

105) 경찰청, 「마약류사범수사실무」, 2001, 112쪽.

106) 2002년도 한국의 마약수사관련 총 예산액은 32억원으로 미국 25조원, 중국 800억원, 일본 390억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이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2, 260쪽.

이다. 첫째로 마약류 공급원의 봉쇄와 강력차단, 둘째로 마약류의 수요를 철저히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이것은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를 요한다. 넷째로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를 들 수 있다.

(1) 麻藥類 供給의 強力 遮斷

마약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양대 전략목표는 공급차단과 수요감축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 밀제조, 불법유통 등 공급을 국제적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마약류 공급차단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적 정책목표 중 하나로 삼아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척결노력에서 성공을 거둔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이행방안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을 강력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① 麻藥類供給事犯에 대한 強力하고 지속적인 法執行

세부추진방안으로는 마약류 전문수사역량 강화, 마약류 밀제조·밀매 등 유통행위 철저 근절,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로 마약류 밀수차단, 대한민국 마약류 밀수출 국가와의 공조강화,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불법이익 등 몰수·추징 철저로 경제적 기반박탈 등이다.

검찰, 경찰, 세관 등 단속기관에서는 수사체제를 강화, 재정비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전문적 수사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인 감정·감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국제 공·항만에 설치된 검찰 마약수사분실과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의 운영을 강화하고 유통조직 전반에 걸친 집요하고 철저한 정보수집과 추적수사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밀제조와 밀매행위를 근절한다. 또한 마약류 제조, 밀수 전과자 등에 대하여는 출입국을 포함한 철저한 동태감시를 통해 재범을 강력 차단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법적인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

로 불법전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며, 국가정보원은 국제적인 마약류범죄정보 특히 대한국 마약류 밀수출 관련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이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 지원한다.

처벌의 강화는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 대책은 공급의 단속과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중점이다.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종전과에 대한 처분내용과 이종전과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이종전과자의 경우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⁷⁾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하여는 중형을 구형하고 중형선고를 유도하는 한편, 교정당국과 협의하여 기시행 중인 마약류사범의 가석방대상 제외제도를 견지하는 등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한다.

마약류범죄로 취득하거나 은닉한 불법이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몰수·추징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재범의지를 강력히 억제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보전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② 組織暴力의 麻藥類 去來介入 徹底 遮斷

세부추진방안으로는 조직폭력에 대한 동태감시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 조직폭력의 마약류 유통개입 철저 차단, 조직폭력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여부 철저 수사,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차단 강화, 엄벌정책 견지 및 재범차단 자금원 차단 및 철저한 자금세탁행위 단속 등이다.

조직폭력이 계속하여 마약류 거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도를 초기에 분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동태감시와 강력한 단속 및 일벌백계식 엄벌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특히 검찰의 마약전담수사반과 조직폭력전담수사반의 유기적인 공조와 함께 경찰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일대일 동태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조직폭력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강대화하기 전에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금원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조직폭력의 전면적 와해에 주력하는 한편, 총기류 소지 및 유통사범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조직폭력이 총기로 무장하거나 총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강력하게 억제한다. 마약류범죄에 개

107)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계논문, 342쪽.

입할 우려가 있는 조직폭력배의 입출국 동향 및 외국 범죄조직원과의 접촉 등 연계 기도에 대하여 철저한 정보수집과 단속 활동 및 국제공조활동을 전개한다. 조직폭력배 수사시 마약류범죄 관련여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병행하고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에 대하여는 통상의 경우보다 엄벌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한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석방 대상에서 계속 제외함으로써 재범방지에 진력한다.

(2) 麻藥類 需要의 徹底 減縮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마약류퇴치를 위하여는 마약류 공급차단 못지않게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철저히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수요억제정책에 주력하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남용을 차단하는데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① 靑少年相對 麻藥類 浸透防止

세부추진방안으로는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언론계·체육계·연예계 및 유흥업계와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방지 적극 홍보, 소년원·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시설에서의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 강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단 등이다.

청소년의 마약류남용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정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중국에는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이들의 마약류 남용은 상당수 친구의 권유 등 사소한 동기, 마약류 폐해에 대한 무지 및 건전한 가정의 파괴,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방치 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정부 유관부처에서는 올바른 학교·사회교육 및 홍보·계몽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게 하는 한편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 약물남용방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이들의 실천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예방·홍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시행하고 전문상담가 및 교육자 양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있는 언론계, 체육계, 연예계와 협조하여 마약류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

고, 마약류 취약지대인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퇴치 예방·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는 한편,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소년범 수용 시설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교부하거나 사용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사범에 대하여는 성인을 상대로 한 마약류사범보다 가중처벌하는 엄단정책을 견지한다. 이 경우에도 마약류를 사용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전과관계, 범행동기,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형사처벌 대신 치료·재활 등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인 사범처리를 한다.

② 汎政府的, 綜合的 麻藥類中毒者 治療·再活政策 推進

세부추진방안으로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 개발·시행, 본드·신나 등 유해화학물질사범 특히 청소년사범에 대한 국가적 치료·재활제도 시행,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탄력적인 사범처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보호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사회복귀 지원, 중증 상습중독자는 치료감호 엄정 적용, 교정시설에서의 마약류 남용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등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조하여 마약류중독자 전문 치료·재활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고 있는 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 유해환각물질 사용자에게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재활장치를 조속히 갖추도록 적극 추진하며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상담 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는 환자로서의 측면과 범죄자로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유보 내지는 면제하고 치료를 우선하도록 탄력적인 사범처리를 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기간을 매월 6월 한 달에서 2001년부터는 3월~6월 4개월간으로 대폭 확대하여 이들에게 사회복귀 기회를 좀더 많이 제공해 주도록 하였다. 이 경우 불입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및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독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중증 상습 중독자는 치료감호를 엄정 적용한다. 교정시설에서도

교육형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재소자들을 상대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범방지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3) 麻藥類問題에 대한 汎國民的 關心과 參與提高

마약류퇴치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해악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갖는 동시에 마약류사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신고정신을 갖추는 등 범국민적인 협조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기관·사회단체·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마약류퇴치운동을 범국민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① 麻藥類問題에 대한 汎國民的 關心提高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민간단체·사회지도층 및 언론의 마약 퇴치운동 장려·지원 및 활성화 유도,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적극 단속 등이다.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는 예방·홍보 계몽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단체와 사회지도층 인사 및 언론기관이 적극 동참하여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한다.

② 汎國民的 申告 協助體制 構築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진신고 등 자율협조체제구축 강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 및 철저한 신변보장책 시행 등이다. 마약류사범 신고 상담전화 및 마약류 사범 신고자 보상금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여 주민자진신고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3~6월 4개월간 실시하는 마약류불법사용자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활성화하며, 마약류 중독자 본인은 물론 가족, 보호자, 교사, 의료인 등의 대리신고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자수자 및 자진 입원치료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4) 國際的 情報交換·共助 等 協力體制 強化

마약류문제는 이미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국가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깊은 인식하에 보다 긴밀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간 신속한 정보교환과 폭넓은 수사공조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역간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결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유엔마약통제본부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과 기여를 통한 마약퇴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國際共助 等 協力體制 構築

세부추진방안으로는 외국 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체제 구축 강화, ADLOMICO(Anti-Drug Lia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운영 내실화 등 지역간 협력활동(sub-regional cooperation) 강화 등이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이 국내유통 마약류의 중심이 되고 있고 국제적 마약류 유통의 경유지화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공·항만의 효율적 감시 및 단속 활동과 더불어 관련국가, 관련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갖추어 신속한 정보교환 및 폭넓은 공조수사 등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된다. 따라서 미국의 마약청과 세관, 중국의 공안과 세관, 일본의 경찰, 세관 및 해상보안청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더욱이 2000년 9월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및 한국 아·태지역 6개국 마약담당실무자간 비상 연락체제를 개설하여 정보교환 및 사범공조등 마약수사관련 국제공조에 대비했으며 이를 향후 적극활용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이 1989년에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ADLOMICO 국제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간 협력체제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국제적 마약류 불법유통 퇴치에 가일층 노력해 나간다.

② 國際協約·國際機構를 통한 國際協力 活動強化 및 弘報

세부추진방안으로는 1988년 유엔마약협약 등 국제마약관련 협약, 국제기구 결

의안 등 철저 준수,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등 국제마약기구와의 공조강화 및 활동지원, 유엔마약위원회(UNCND) 등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기여,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활동과 국제협력의지 적극 홍보 등이다.

1988년 유엔마약협약을 비롯한 유엔마약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울러 유엔마약위원회 회원국으로서 동 협약과 국제기구의 각종 결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유엔마약통제본부 등 국제기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협력하며 유관국가간 범죄인 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을 통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한다. 유엔마약위원회, 아·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등 국제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적극 기여해 나감으로써 우리 정부의 마약퇴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재천명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퇴치에 성공한 모범적인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 제고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다.

5) 麻藥類事犯 申告와 補償金制度 改善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4조). 마약류범죄의 수사단서는 마약류범죄의 은밀성, 조직성, 국제성의 특성상 정보의 제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 정보의 제공자는 마약범죄에 깊이 가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나 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령 제23조 1항). 다만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규칙 제4조 1항).

보상금은 신고·고발 또는 검거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령 제25조 1항). 또한 보상금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함)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

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마약류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건기준액의 100분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령 제25조 2항).¹⁰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19일 법무부령 제341호로 보상금지급규칙이 제정되어 2000. 8. 31. 부령497호로 일부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건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는데(규칙 제14조 1항),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4조 2항).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사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이며 지급절차도 법무부에서 총괄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약류사범의 신고·고발·검거에 따른 실질적인 수사비와 경비를 공제하고서도 유익한 금액이 되어야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고발·검거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마약사범에 대한 보상금은 검찰뿐만 아니라 각 수사기관별로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신속한 지급체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표 14> 마약류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기준가액	보상금상한액	
	공무원	민간인
10억원 이상	1천만원	5천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백만원	3천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백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백만원	1천5백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백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백만원	7백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십만원	5백만원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5십만원	3백만원
1십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3십만원	1백만원

자료: 법무부령 제497호,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108)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 규칙 제14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규칙 제14조 5항).

第 6 章 結 論

연간 우리나라의 국제공항과 항구를 통과하는 출입국자는 1,000만명에 이른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세계화 되었음을 실감케 한다. 세계화는 1990년대 말 IMF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경험한 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세계화를 향한 부단한 노력으로 경제위기는 극복하였지만, 반대급부로 우리나라는 국제범죄의 유입이라는 부작용을 떠안게 되었다. 연간 국민 10명 중 1명꼴로 해외를 출입하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국제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는 지리·경제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북경, 상해, 동경, 오사카, 서울 등 아시아 5대 도시와 비행기로 2시간 이내에 연결될 수 있으며 동북아 물류벨트(logistics belt : 러시아-일본-대만-홍콩-중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물류비용의 약 60%가 운송비이고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고려하면 동북아의 주요상품 생산지로부터 해상공간적으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제주도는 새로운 동북아 물류기지로서 부각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화와 관련 마약류사범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제주국제자유도시화로 인해 변화될 주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약 수사상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범여객기에 대한 불시 全數검사 실시, 제주공항 입국 여객기에 대한 수시 연속 밀수감시, 마약류밀수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상향 조정, 제주 지방관세청에 마약전담과 신설 및 마약 전담요원 증원, 해외 주재 관세관 및 마약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관세청 직원의 마약 전문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마약 탐지견 활용의 효율화, 각종 밀수 감시 장비의 보강 특히 휴대용 이온스캐너, 컨테이너 화물검색용 X-Ray투시기, 컨테이너 화물 및 항공팔레트 화물검색기 등의 도입 또는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마약류사범 검거를 위하여 국제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1999년 4월 조직폭력배인 신사상과의 멤버인 구기본은 일본의 신설 범죄조직인 수미요시카이파

와 함께 메스암페타민 100kg을 일본으로 밀반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한·일양국의 협조에 의하여 검거된 사례가 있고, 2001년 3월 조직폭력배인 김사장과 두목 김동화는 조직원 4명을 중국으로 보내어 메스암페타민 750kg이나 제조한 후 우리나라에 밀반입하려다 한·중 양국의 협조에 의하여 남해 바다에서 검거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화로 인하여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절실해진 것은 제주도가 우리나라 스스로의 편의와 장점에 따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의 확대와 편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와 별도로 제주도만을 집중적으로 국제적인 수사공조, 정보공유, 학술적인 대처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일본, 중국여행객의 출·입국이 잦다. 앞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수사공조는 특히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그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마약수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주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방안의 내용으로는 제주 국제공항을 통하여 밀입·출국하는 마약사범을 적발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외국인, 국내조직폭력배에 대한 각별한 감시를 요하며, 정보전산화와 정보의 공유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마약사범 전문수사교육 및 감정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 검찰수사의 부수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전담기구를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수사기관은 마약거래 조직에 수사관과 정보원을 투입하거나, 수사관을 마약 거래자로 위장해 수사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선진국 수사기관들은 함정수사가 아니고는 마약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 이를 합법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범죄조직의 상부는 검거치 못하고 하수인만 검거하는 실정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범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마약류범죄를 미연에 단속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의 전철을 피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넷째, 마약류규제 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마약류 공급원을 강력 차단하는 일과 마약류 수요를 철저히 감축해 나아가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마약류사범신고와 보상금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방안도, 반드시 제주 국제자유도시화에 기한 대처는 아니지만 마약류사범을 색출하는 데에는 국민 일반의 신고가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적 사고에 투철한 현대인에게 획기적인 경제적 보상이 전제될 때, 마약류사범 수사에 결정적인 제보와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마약류사범 문제가 기우로 그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화가 마약류사범이 서식하기 좋은 토양이 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마약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수사주체들에게 수사목적에 부합하는 권한과 처우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찰 마약수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민한 현장감을 갖춘 경찰조직 안의 마약수사 전담기구 설치 등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이보영, 「형사정책」, 제일법규, 1996.
전경수, 「한국마약사범수사론」, 수사연구사, 1994.
전경수, 「마약범죄수사론」, 수사연구사, 1995.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법문사, 1997.
진계호, 「형사정책」, 대왕사, 2002.

2) 논문

- 김달남, “약물범죄수익박탈에 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7.
- 김상희·정진수,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김선민, “미국의 마약사범 사범처리 과정의 한국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999.
- 박해룡, “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서보학,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범치국가적 한계”, 「안암법학」 제5호, 안암법학회, 1997.
- 신의기·강은영·이민식, “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이병기·이경재,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이승묵, “한국 마약류 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6.
- 이은모, “약물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이정수 외 3인, “메스암페타민사범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 이훈규·최병각,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임대환, “마약밀수 단속의 효율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2000.

전영화,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과 규제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조승철, “마약류사범의 실태분석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조은석·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3) 정부간행물

경찰청, 「마약류사범 수사실무」, 2001.

관세청, 「최근마약밀수동향」, 협동문고, 1999.

_____, 「감시국통계자료」, 감시국, 1998.

_____, 「조사국통계자료」, 조사국, 1998.

국가안전기획부, 「21C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국제범죄정보자료집, 1998.

_____, 「북한의 마약범죄동향」, 국제범죄정보자료집, 1998.

_____, 「세계마약류생산과 밀매실태」, 국제범죄정보자료집, 1997.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1998.

_____, 「마약류 범죄백서」, 2001.

_____, 「마약류 범죄백서」, 2002.

대검찰청 마약부, 국가마약퇴치전략, 1999.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3.

4) 기타

이중화, “필로폰 원료 북한행 막아라”, 신동아, 2002, 6.

조선일보, 1999. 10. 10

중앙일보, 1999. 10. 3

한국일보, 1998. 7. 22

_____, 1998. 12. 26

<http://www.chejulove.or.kr>

<http://www.customs.go.kr>

<http://www.sppo.go.kr>

<http://web12.cri.com.cn>

<http://home.freechal.com>

2. 외국문헌

Customs cooperation council, Manual profiling suspect cargo, passengers and postal items, 1994.

Highlights from the National Drug and Alcoholism Treatment Unit survey, NIDA, Division of Epidemiology and Statistical Analysis, 1989.

Howard Abadinsky, Drug Abuse : An Introduction, Chicago : Nelson Hall Inc., 1989.

Peter R Andreas and Kenneth E. Sharpe, “Cocaine Politics in the Andes” , Current History, February, 1992.

RILO(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Training materials, 1998.

Tullis, L, et al : Handbook of Research on the Illicit Drug Trad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1991.

Uelmen, Gerale F. & Victor G. Haddox, Drug Abuse and the Law Sourcebook, New York :Clark Boardmen Company, 1998.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Global Illicit Drug Trends』 , 1999.

UN International Narcotic Control Board, Customs and Drugs, 1998.

UN International Narcotic Control Board, 『Report 1998』 , 1999.

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statistics , 1999.

World Customs Organization, 『Customs and Drugs 1998』 , 1999.

World Customs Organization,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Practical Exercises,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Drugs-smuggling and Countermeasures in Korea

- Relating to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Plan-

Kang, Sung-Yu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Kuhn

The purpose of the above thesis is to examine the status quo of Drugs-smuggling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Korea is well known as one of drug free countries. Due to the drastic and rapid growth in economy and general mood of population to experience something unusual, the korean society is, however, gradually changing into a drug-polluted area. Now we are facing against drug smuggling by domestic and foreign people. Drug misuses by juveniles and young people are no more news. Thanks to the door-wide-open to foreign tourists prosecutors and custom officers are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e channels handling drugs. A correction of narcotic patients to ordinary life can be also a countermeasure of drug crimes. This is not included in this thesis, however. In this thesis only the drug crime and searching drug criminals are handled.

As the recently appearing crime, the unprecedented augmentation of narcotics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e sorts of omens - the

devastation of human mind and the backwashes from the material civilization.

In this study, I departed from the definition of narcotic drug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ut of drugs from their harvest and production area like Tai, Laos, Burma, Bolivia to the domestic customers, it is also not to give up to give an account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narcotics, and the problems on the network of police search. And then I surveyed the actual condition of narcotics, acts and statutes relating to drugs. The police search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gainst drug smuggling and handling of drug products were also examined.

At least the half of this thesis are made use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its impact on drug smuggling and misuse. As the Jeju international city program means removing every fence to foreign tourists and foreign suspects as well, it is highly recommendable that a strong and sound countermeasure should be taken. As such measure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 I. Every plane bounding for Jeju should be checked with modernized equipments.
- II.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drug smuggling should be enhanced.
- III. Drug searching system of prosecutors, custom offices and police should be improved. Especially in Jeju, the role of police should be emphasized as soon as possible. It is to recommend that in Jeju a special team against drug smuggling and handling be made.

- IV. Drug regulation policy should be fundamentally completed. To this belongs first of all the policy relating to reducing drug misuse and stopping supply channel of drugs.
- V. File of drug handling and compensation for drug crimes should be improved. Lastly, I as a police staff having experience of searching drug criminals have an opinion that an agency of police specialized against drug crimes is urgently needed.

